

# 속기연구논문집

2002

대한속기협회

# 속기연구논문집

2002

대한속기협회





## 총 목 차

-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문의 방법론적 고찰 / 홍기표 • 5
- 속기실무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업무효율화 방안 / 김란희 • 87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문의 방법론적 고찰

홍 기 표



# 차례

## I. 수문의 정의 / 9

1. 속기사의 3대 조건 / 9
2. 수문의 필요성 / 10

## II. 수문의 원리 / 14

## III. 원리의 점검과 적용 / 18

1.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일치와 한계 / 18
2. 구두점의 원리와 적용 / 22
3. 어휘의 문법적 위치 정리 / 34
4. 문체의 변용과 한계 / 51
5. 청취능력과 정확성의 상관관계 / 57
  - (1) 청취능력은 어휘력에 비례한다 / 57
  - (2) 청취능력은 이해력에 비례한다 / 60
  - (3) 청취능력은 지식수준에 비례한다 / 62

## IV.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 66

1. 생각하는 속기를 하라 / 66
2. 범조문은 반드시 확인하라 / 68
3. 모든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라 / 70
4. 유사음 이의어에 유의하라 / 72
5. 잘못된 발음이나 음운현상에 유의하라 / 74
6. 조사를 바르게 챙겨라 / 75
7. 숫자는 무조건 재확인하라 / 76
8. 부호문자를 정확히 표기하라 / 77
9. 생소한 용어는 끝까지 확인하라 / 78
10. 오역·오타에 주의하라 / 80

## V. 결론 / 83

참고문헌 / 86





# I. 수문의 정의

## 1. 속기사의 3대 조건

속기록의 생명은 그 정확성에 달려 있다. 그 정확성은 속기사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러나 그 능력이란 단순히 능숙한 속기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질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속기사의 3대 조건 중 하나인 수문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중요와 함께 속기 업무의 전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능한<sup>1)</sup> 속기사란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용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속기편람』<sup>2)</sup>에서 말하고 있는 ‘유능한 속기사’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는 전문 직업 속기사가 구비해야 할 속기사의 3대 조건을 말해 주고 있다.

첫째,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청취능력을 말한다. 청취능력이란 단순한 청력(聽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음성언어를 정확히 새겨듣고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청취능력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 지적 능력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 하나는 풍부한 어휘력이요, 또 하나는 뛰어난 이해력이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설사 발언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바로 새겨들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해력 역시 마찬가지다. 음성언어의 어휘 하나하나

1) 원문에는 ‘우수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eminent’ 혹은 ‘prominent’의 번역으로 보아 필자 임의로 ‘유능한’으로 바꾸었다.

2) 1969. 국회사무처 간

가 구성해 내는 의미와 논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명료한 발음조차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불분명한 발음이나 혹은 부정확한 용어라도 분명한 발음과 정확한 용어로 교정하면서 듣는다. 풍부한 어휘력과 뛰어난 이해력, 이는 속기술 이전에 속기사가 되려는 이들이 구비해야 할 제일의적인 조건이다.

둘째, 속기사는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운필능력을 말한다. 속기사는 언어 속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음성언어 한 마디, 한 마디를 정확히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기계속기에 있어서는 운지능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라 하는 것은 훈련의 양에 따라 대체로 일정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속기술은 다르다. 소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활속기 수준에 도달하기도 어렵다. 발화(發話) 순간 허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음성언어를 순간적으로 부호문자로 정착시키는 것은 아무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전문 직업 속기사가 되려면 천부적인 소질과 남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천부적인 소질이란 빠른 손놀림과 예민한 언어감각을 말함이요, 남다른 노력이란 바로 이러한 소질을 바탕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끈기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속기사에게는, 용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수문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 2. 수문의 필요성

속기의 대상은 인간의 음성언어이다. 음성언어는 음성의 고저·강약이나 말할 때의 제스처와 표정에 따라 의미를 달리할 때가 많다. 또한 발언자가 부정확한

용어를 구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말하는 그대로 '음성'만을 문자화할 경우 독자들은 그 의미를 얻은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때로는 그 정확한 내용을 짚어 내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 심지어는 내용이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감동적이고 열 띄었던 발언들이 속기록에서는 맥 빠진 활자만 누워 있을 수도 있다. 속기 업무를 '문자화'로만 끝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속기사의 비판적 판단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다.

속기록 작성의 제1 원리는 '말한 그대로'의 기록이다. 그런데 속기사의 비판적 판단이 가해진 속기록이란 과연 어떠한 기록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1907년 영국의회에서 채택된 의회의사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중복된 말과 군더더기 말은 빼고 명백히 잘못된 말은 고치는 등 완벽하게 말한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한편으로는 토론에서의 주장이나 발언이 의도하는 바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말한 그대로의 기록...”<sup>3)</sup>**

이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말한 그대로의 기록'이란 어떠한 기록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첫째로 중복된 말과 군더더기 말을 뺀 기록이다. 둘째로 명백히 잘못된 말은 고친 기록이다. 셋째로 말한 그대로의 완벽한 재생이 아니라 토론에서의 주장이나 발언의 의도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기록이다.

의회회의록은 '말한 그대로의 기록'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음성언어를 일언일구 빠짐없이 문자화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속기사의 비판적 판단을 통하여 문자언어화된 기록인 것이다. 말하자면, 음성언어로 표현된 주장이나 발언의 의도가 문자언어를 통하여 명료하게 되살려진 기록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속기사의 비판적 판단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음성언어의 문자언어화, 그것이 곧 수

---

3) HANSARD-영국의회 의사록(2001. 대한속기협회)

문이다. 그러한 수문의 목적은, 의원들의 발언이나 주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문자언어화는 문어체화와는 다르다. 음성언어에서의 구어체적 특성은 그 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문법적 요소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 면 중복된 말과 군더더기는 빼야 한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중복된 말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한 말에는 차이가 있다. 명백히 잘못된 말과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구사한 어휘 또한 마찬가지다. 속기사는 그러한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속기사는 잡다한 음성의 고도의 식별자(Discriminator)이며, 또한 결정자(Concluder)라야 한다. 발언자가 무엇인가 확실히 발음하지 않거나 또는 빼먹는 경우에도 속기사는 곧 그 사실을 식별, 분석하고 결정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엮어 낼 수 있는 두뇌의 소지자라야 한다(‘음성식별 전문가로서의 속기사’-Grant E Perry. 전직 미 상원 속기사).<sup>4)</sup>

의회회의록에 대한 영국의회의 정의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모든 영국 상하원과 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국에서는 사실상 발언자의 의도대로 읽혀지게 하는, ‘분별력 있게 말한 대로’의 의회회의록의 문화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의회회의록의 질은 의회속기사의 지적 능력에 비례한다. 따라서 의회회의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속기사의 지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 지적 능력이란 것은 바로 속기사의 청취능력과 수문능력을 말한다. 녹음기와 비디오표 같은 과학기기의 발명으로 운필능력의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청취능력과 수문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속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광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올바른 속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면 의회속기사의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별

---

4) 速記總覽(1972. 대한속기협회 간)

력 있게 말한 대로' 기록하려면, 즉 음성언어를 정확히 청취하고 이를 정확히 문자언어화하려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의회회의록의 생명인 정확성은 바로 속기사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II. 수문의 원리

현재 국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현직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수문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되면 막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것이다. 당연히 속기사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나름대로 수문의 노하우를 익혀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회의록에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는 갖가지 형태의 수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자.

### <예문 1>

글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원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지요. 왜 단순청탁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이지요. 그 단순청탁은 얘기하지 말고 딴 거 얘기하라고, 돈 받은 것만 얘기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순청탁도 이것도 수사를 하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말이지요. 나는 단순청탁이 뭐가 그랬더니 그게 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 들어오는 청탁이더라고요. 그건 뭐냐, 기무사 등 고위층 아니면 무슨 저 고위층 인사들이 하는 그 청탁 아니에요? 그렇지요?

### <예문 2>

그래서 저는 경찰관들에게 “이 채권에 대한 것은 무효다.”라는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으로 포주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 내용 그대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문 1>은 제233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 전재(轉載)한 것이다. 일언일구 말한 그대로 문자화해 놓은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예문 2>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제232회 제8차 본회의록에 실린 한 여성 의원의 발언인데,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그 발언이 사뭇 달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관들이 말이지요, 이 채권에 대한 이것이 무효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고소 내용대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양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 볼 때 <예문 2>는 발언 내용을 말한 대로 기록하지 않고 문장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언하는 스타일은 대동소이한데 속기사가 누구냐에 따라 회의록에는 이만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예문 1>의 속기사는 수문에 대한 개념이 없든지 아니면 수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일 것이다. 반면에 <예문 2>의 속기사는 철저한 수문주의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현직 속기사들 중에는 극단의 수문주의자와 극단의 수문 거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속기사들은 그 중간쯤 단계에서 뚜렷한 원칙도 없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의회속기 반세기를 넘기면서도 아직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고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능한 속기사는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고 했다. 아무런 주관이나 생각 없이 음성언어를 일언일구 문자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문자언어화하여 발언의 형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도 문제다. 나아가서 비판적 판단을 가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수문을 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발언이나 주장의 의도를, 또는 내용 자체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문에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인가? 원리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미국 대통령 문서록 편집장 마이클 설리번의 말을 빌려 그 원리를 정리해 보자.



몇 년 후 누군가가 연설문을 찾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확성이다.<sup>5)</sup>

이것은 속기록을 번문하면서 수문을 하려 할 때 그 비판적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원리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말이라 하겠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① 단어 하나하나가 발언자가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한다.

이것은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이다. 의회회의록은 의원들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한다. 따라서, 속기사는 의원들이 구사한 단어를 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로 바꾸어 주거나 거짓말을 정말로, 아니면 논리의 비약 같은 것을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음성언어를 일언일구 빠뜨리지 말고 문자화하라는 것은 아니다. 단어 하나 하나는 정확하게 의원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하지만 거기에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② 구두점을 바르게 챙겨야 한다.

③ 문법을 바르게 챙겨야 한다.

④ 문체를 바르게 챙겨야 한다.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말이지만 이 세 가지 원리는 속기사에게 문자언어의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겨 주는 것은 문자언어화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이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가위만 들고 남의 머리 깎아 주겠다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속기사가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즉 청취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구두점을 챙겨 주고, 문법을 챙겨 주고, 문체를 챙겨 주는 것 또한 전혀 무의미한 헛수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

5) 신동아 인터뷰(1997. 11월 호)

**⑤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챙겨야 한다.**

정확성을 챙기려면 속기사는 음성언어에 대한 고도의 청취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오청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속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오청 가능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취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 ‘말한 대로 정확히’ 기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 Ⅲ. 원리의 점검과 적용

#### 1.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일치와 한계

속기를 한다는 것은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다 좋은 어휘와 보다 나은 표현을 위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미 발언자가 충분히 고민한 문제다. 발언자가 부적합한 어휘를 구사한다 하여, 논리 전개가 어설피다 하여 이를 바로잡아 줄 필요는 없다. 거짓말을 정말로 바꾸거나 무식한 발언을 유식한 발언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으면 되는 것이다. 속기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발언 내용을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예문 1>

①그래도 혈세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이미 나온 판례와 새로운 재판 결과 사이에서 국민들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망황하는 억울한 케이스는 지금 이후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과거에도 있어서는 안 되었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호소해야 될 민원인들이 많지만 아마 망망대해인 것 같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sup>6)</sup>

②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여성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성차별 의식에 대한 증진입니다. 성차별 의식을 증진하고 또 여성권의 사업을 증진하는 일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sup>7)</sup>

①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전례도 없다. 그런데 출석하지도 않은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답변 요구는 반복된다.

6) 제225회 제1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제234회 제3차 여성위원회

②성차별 의식에 대한 증진? 아무리 보아도 어휘 선택이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문법적으로도 완벽하다. 그리고 독자들은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입가에 미소가 감돌면서.

이런 경우 속기사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말한 그대로, 단어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기록해 주면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여 함부로 속기사의 판단을 개입시켰다가는 엉뚱한 실수를 범하기 쉽다. 다음 예문이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 <예문 2>

올해 건강보험 재정 목표는 얼마입니까? **李 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려다 무산된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에서는 3500억 원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임 장관에 비해서 4000억 원을 추가 절감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sup>8)</sup>

본회의 회의록이다. 한데 인터넷 중계방송에 들어가 대조해 보니, 속기사는 단어 하나를 의도적으로 빼 버렸음을 알 수 있었다. “3500억 원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3500억 원의 적자를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였다. 속기사는 3500억의 ‘적자’를 ‘목표’로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작년에 7500억의 적자 상태였다. 이를 4000억을 절감하여 그 적자폭을 3500억으로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으니 발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무조건 빼거나 고쳐서는 안 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예문 3>

그런데 여기 문제는 첫째로 내국세의 28%를 지방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에 대법원이 손해를 끼치고 있

8) 제232회 제8차 본회의

다, 열악한 재정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지방정부에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대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방정부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원실에 확인하여 보았으나 '여기에서 지방정부에 대법원이'를 '여기에서 지방정부에 갈 28%가 빠진 만큼 대법원이'로 고쳐 달라는 부탁뿐이었다. 고치나 안 고치나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괜히 흑만 더 붙인 꼴이 되었다. 논리적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고민할 필요 없이 말한 그대로 기록할 일이다.

<예문 4>

○질의 :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높은 자는 어른이고 낮은 자는  
얼간이 이럴 때는 얼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얼이고 좀 높은 자라고.....

○답변 : 긴 소리라는 뜻입니다.

○질의 :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방법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답변 :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 일입니다마는 국어교육에서 長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수문을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오류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질의·답변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질의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황설수설이다. '높은 자는 어른이고 낮은 자는 얼간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리 보아도 무슨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 질의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결과,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얼:'은 높은 자고 낮은 자는 '얼간이', 이럴 때는 얼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얼이고 좀 높은 자라고... (필자 주; 뒷부분은 어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는 듯.)

얼른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어지는 답변으로 미루어 질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긴 소리, 長短, 이 두 단어에 비추어 볼 때 질의자는 장·단음을 고·저음과 헷갈린 상태에서 질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헷갈린 것을 답변자는 “긴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면서 정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언일구 발음에만 집착하다 보니 “‘얼:’은 높은 자고”를 “어른 높은 자고”로 청취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또 수문이라는 걸 했다. “높은 자는 어른이고”라고. 바담뽕 발문에 빠담뽕 수문이다.

여기에 제대로 수문을 가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얼:’은 장음이고 ‘얼간이’의 ‘얼’은 단음인데, 이렇게 ‘얼간이’에는 ‘얼’에 아무 표시가 없지만 ‘얼:’에는 ‘우리나라의 얼’이라고 할 때처럼 길게 발음하라고 장음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문을 해 줄 필요는 없다. 무식한 발음을 유식한 발음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식한 발음을 음성만 기록해 놓으면 독자가 헷갈리게 된다. 거기에 속기사의 이해 부족으로 수문이 잘못 가해 지면 위 예문처럼 더욱 뜻 모를 황설수설이 되는 것이다.

위 예문은 질의 내용은 필자가 확인하여 기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그래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이들을 위하여 답변 내용에 조금 수문을 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국어교육에서 음의 장·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을 “음의 장·단”으로만 바꾸어 주어도 질의·답변 내용이 보다 확연해지게 되었다. 또 독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하고 있는 상황을 그런대로 눈치 챌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평범한 내용인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설픈 수문으로 발음 내용을 망가뜨려 놓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예문 5>

철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철원에 있는 황해도 연백평야 일대의 평양 근처 평안남도까지는 거의 커버하는 같은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철원에 있는 황해도 연백평야? 연백평야 일대의 평양?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내용이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걸 전혀 바로잡지를 못했으니…… ‘지구대’란 또 무슨 뜻일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철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철원이면 황해도 연백평야 일대, 평양 근처 평안남도까지는 거의 커버하는 같은 지구대(地溝帶)가 되겠습니다.

말한 그대로 문자화해 놓고 구두점만 몇 개 챙겨 주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발언이다. 그런데 속기사는 내용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수문까지 가했다. 이렇게 합부로 수문을 하려다가는 속기사 자신의 유식하지 못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는 경우도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말한 대로 기록하라!

## 2. 구두점의 원리와 적용

구두점(문장부호)란 무엇인가? 온점, 반점, 쌍점, 쌍반점, 물음표, 느낌표 따위 문장부호를 말한다.<sup>9)</sup> 그러한 문장부호는 왜 필요한가?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문장부호의 적절하고 현명한 사용은 혼동하기 쉬운 문장을 읽기 쉽게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 잘못 사용된 문장부호는 문장의 의미를 바꾸어 놓거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문장부호를 바르게 챙기려면 물론 문장부호의 종류와 그 사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용법을 익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성언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도를 문자언

9)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

어로 정확히 살려내려면 문어체 일반에서 사용하는 문장부호와는 또 다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문장부호 전반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회의록에서 눈에 많이 띄는 오용례를 찾아 그 바른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쉼표( , )와 가운뎃점( · )

<예문 1>

- ① 자연, 학연, 혈연으로 얽힌 청탁문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 ② 공적자금의 조성·지원·회수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금융구조 개혁의 성과를 확보하고
- ③ 급식 위생 난방 등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정기검진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예문의 밑줄 부분은 똑같이 같은 자격의 어구를 나열해 놓은 경우이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맞춤법에 의하면, 위 예문에서처럼 단어를 나열하는 경우에는 ①처럼 반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구나 절의 나열에도 반점을 쓴다.

<예문 2>

- 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 ② 나는 잘 모르지만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사법권도 미치지 않고 관세주권도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 비슷한 자유도시라는 것이 구라과 일대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 ~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사법권도 미치지 않고, 관세주권도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

③현재의 재판관 중에서 국회가 추천한 3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외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관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 ~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관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점이 연속되어 부자연스러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한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sup>10)</sup>

### <예문 3>

첫째, 물불 안 가리는 계좌 추적, 둘째, 온 국민이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도청공화국이라는 오명, 셋째, 긴급체포의 남발, 넷째, 표적 세무조사, 이 네 가지는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첫째 물불 안 가리는 계좌 추적, 둘째 온 국민이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도청공화국이라는 오명, 셋째 긴급체포의 남발, 넷째 표적 세무조사, 이 네 가지는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예문 4>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을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반점으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는 가운데뎛점을 사용한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여당무죄·야당유죄,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을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

10) 국립국어연구원 회신

다음 예문은 여러 사실의 나열 가운데 대등한 단위가 나타난다. 이때 그 대등한 단위에 가운뎃점을 사용하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독자들의 이해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 <예문 5>

①형사처벌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폐단도 있지만,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에는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1, 2, 3심 전부 하는 등 당사자로서는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은 것입니다.

→ ~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1·2·3심 전부 하는 등 당사자로서는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은 것입니다.

②이용호 사건의 불입건 처리 의혹은 물론이고, 정치권 인사 비호 개입의혹,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 로비 및 개입의혹, 전환사채 등 시세차익 목적의 사설펀드 의혹, 해저보물 발굴 빙자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을 해야 됩니다.

→ ~ 정치권 인사 비호 개입의혹, 금융감독원·국세청·국정원 등 권력기관 로비 및 개입의혹, 전환사채 등 시세차익 목적의 사설펀드 의혹, 해저보물 발굴 빙자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을 해야 됩니다.

<제안> 요즘 신문 기사 중에는 단어의 나열에도 반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회의록에도 내용 이해에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원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 <예문 6>

비빔밥은 오이 애호박 시금치 미나리 등 기본적인 나물에 각 지방의 특산물이 섞여 고유한 맛을 내는데 특히 전주 진주 해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sup>11)</sup> 위 제안을 채택한다면 <예문 1>의 세 가지 예문에서는 ③번 예문으로 통일하는

11) 동아일보 횡설수설(2002. 10. 19)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의회회의록의 특성상 반점을 자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예문 7>

그 당시에 증인을 위해서 구명운동에 나서 준 정치인이나 법조인, 즉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까?

→ ~ 정치인이나 법조인, 즉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위 제안을 무조건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다음과 같이 나열되는 단어 중 수식어가 붙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반점을 써야 한다.

<예문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2차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비대, 알콜성 간중독, 간질,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되었습니다.

2) 심표( , )와 물음표( ? )와 마침표( . )

용언의 어미 활용이 의문형이라도 그 자체가 질문이 아니거나 질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물음표를 쓰지 않는다.

<예문 9>

①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해 주면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고마워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도를 다른 법원에도 확산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 고마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②그러면 이 조건을 왜 바꾸었는지? 누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 ~ 그러면 이 조건을 왜 바꾸었는지, 누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한 문장에서 의문형 어미가 반복될 경우 선택적인 물음에는 앞부분에는 반점을, 뒷부분에는 물음표를 쓰고, 각각 독립적인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예문 10>

- ① 변호사 선임료 지급 수단은 현금입니까, 수표입니까?(선택적 물음)
- ②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카웃하는 데 5000만 원씩이나 줘야 해요?(독립적 물음)

문장의 중간에 끼어드는 또 다른 문장이나 구절이 있을 경우에도 그 앞뒤에는 반점을 쓴다.

<예문 11>

금융실명제에서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하지만 동시에 금융감독을 위해서 부외거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부에서 누락한 것이 부외거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000억 원이 현대상선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감독을 위해서 부외거래가 존재하는 것 같은 문장이 되어 버렸다. 끼어든 문장의 앞뒤에 반점을 쓰면 다음과 같이 바뀐다.

→ 금융실명제에서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하지만 동시에 금융감독을 위해서, 부외거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부에서 누락한 것이 부외거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000억 원이 현대상선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회의록에서는 헛표가 원칙에 맞지 않게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문 12>

- ①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이다, 의혹이다 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수사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판명되어 가지 않습니까”에서 ‘습니까’는 독립적인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물음

표를 써야 한다. 뒤에 이어지는 “소문이다, 의혹이다”와는 별개의 문장인 것이다.

②이명현 증인이 써 놓은 것을 내가 몇 번 읽었어요. 여기 오마이뉴스에도 나와 있고, 신동아에도 그때 인터뷰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 신동아 2000년 4월 호에 이명현 증인이 한 것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인터뷰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는 질문 다음에 다시 확인 질문을 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질문의 나열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질문이므로 “그때 인터뷰한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와 같이 둘 다 물음표를 써야 한다. 다음에 “이명현 증인이 한 것 있어요, 그렇지요?”에서 ‘있어요’는 서술형 종결어미다. 마침표를 써야 한다. 이러한 문장부호의 오용은 회의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일이다.

③문제가 없으면 애당초부터 값싼 국산 실리콘을 쓸 일이지 왜 값비싼 일제 실리콘으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누출은 안 되더라도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등등을 고려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밑줄 부분은 도치된 문장이다. 도치된 문장의 경우에는 앞 문장이 종결어미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점을 쓰고 실제적으로 문장이 종결된 곳에 마침표를 써야 한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누출은 안 되더라도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

자문자답을 하는 경우에도 물음표를 쓴다.

<예문 13>

최근에 저는 경찰병원에 현장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의경이 없어요. 왜 없느냐, 시위에 부상당하는 환자가 별로 안 생기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상을 안 당하는 대신에 누가 부상을 당하느냐, 용역으로 투입된 경비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그

들이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 ~ 왜 없느냐? 시위에 부상당하는 환자가 별로 안 생기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상을 안 당하는 대신에 누가 부상을 당하느냐? 용역으로 투입된 경비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

종결어미가 의문형으로 끝나더라도 물음의 의미가 약하거나 설의(設疑)적인 경우에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문 14>

주위의 청탁이나 다른 의도로 이것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했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사자는 정말이 아니라고 아주 강변하고 있습니다.

→ ~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사자는 정말이 아니라고 ~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예문 12> - ①은 아래와 같이 기록해도 좋을 것이다.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이다, 의혹이다 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수사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 3) 줄표( — )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낼 경우에는 줄표(—)를 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줄표 앞뒤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보아 그에 필요한 단어를 더하거나 중복되는 어휘를 삭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예문 15>

①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도 없이 4억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 김정일은 실정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뒷거래로 제공했습니다.

→ ~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김정일은 실정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뒷거래로 제공했습니다.

②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액에 대한, 금지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에서 말하는 금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지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 ~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액에 대한—금지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에서 말하는 금괴를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 4) 물결표( ~ )

##### <예문 16>

이십삼사오륙일 동안 세미나를 겸한 당원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음성언어를 그대로 문자화해 놓음으로써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럴 때 물결표의 사용은 아주 효과적이다. 물결표는 '9월 15일~9월 25일'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나타내하고자 할 때 쓴다.

→23~26일 동안 세미나를 겸한 당원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물결표는 날짜나 연도만이 아니라 시대의 경과를 의미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예문 17>

고려 말, 조선 초에 동성불혼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고려 말~조선 초에 동성불혼의 원칙이 ~

#### 4) 화살표( → )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라도 어떤 변화 과정이나 절차를 의미할 경우에는 화살표를 쓰는 것이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독자들의 이해도 쉬워진다.

<예문 18>

①여성부는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정무2장관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로 이어지면서 여성권의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으로서의 모양을 점차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 ~그동안 정무2장관실→여성특별위원회→여성부로 이어지면서 ~

②범민족대회라는 것은 북한이 벌써 50년 전 해방 후부터 계속 주장해 온 남북민족연석회의, 사회단체 간의 연석회의, 범민족회의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통일전술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남북민족연석회의→사회단체 간의 연석회의→범민족회의로 계속 ~

4)괄호( ( ) )

법조문을 인용할 때 우리는 해당 법조문을 일일이 확인해서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 형태도 條제목을 비롯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19>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 ~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를 정면으로 ~

법조문을 원문과 다르게 인용할 경우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부득이 원문과 다르게 낭독했을 경우에도 원문대로 기록하는 것이 독자들은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음성언어에 집착하여 말한 그대로 음성만을 문자화해 놓으면 아래와 같은 우스운 꼴이 된다.



<예문 20>

①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금지원에관한법률 1조를 보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이라 한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금지원에관한법률 1조(목적)에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이 정리지계획안에 반영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제199조, 제228조, 아래에 저희가 참고로 조문을 달았습니다.

제233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수정명령, 제190조에 있습니다. 정리지계획안의 배제, 제199조 또는 법원에서 정리지계획안 불인가 결정, 제233조에 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리지계획안에 반영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제199조, 제228조, 아래에 저희가 참고로 조문을 달았습니다.—제 233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수정명령(제190조), 정리지계획안의 배제(제199조), 또는 법원에서 정리지계획안 불인가 결정(제233조)의 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화시대의 도래 탓인지 의회에서의 외래어 사용 빈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같은 뜻의 용어를 우리말과 외래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외래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나 굳이 기록을 한다면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문 21>

미국이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개방적 지역협력, 오픈 리저널리즘(open regionalism)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 예문에서 '오픈 리저널리즘'이란 영어 발음의 한글 표기는 속기록을 우습게 만드는, 필요 이상의 헛수고이다. 다만, '개방적 지역협력 = open regionalism' 관계이므로 아래와 같이 괄호 속에 처리함이 글쓰기 일반의 원리다.

→ ~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개방적 지역협력(open regionalism)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문 22>

자회사가 현재 약 40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역량을 육성한다, 코아 컨피던스(core confidence)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공기업 분야로 남는 자회사에 대해선 엄격한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역량을 육성한다, 코아 컨피던스(core confidence)를 육성한다'는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일 뿐이다.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다. 이럴 경우도 괄호를 사용하여 과감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역량(core confidence)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

<예문 23>

인민을 아사지경에 몰아넣고 세계의 최빈국이 되어서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하면서도 WMD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평화 애호국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러면서도 일부 특권계층은 호의호식하는 이런 북한 지도층을 식

견이 있느니, 영명하니 찬양하는 인터넷 글이 오르는가 하면 그러한 경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WMD 대량살상무기’ 역시 동어반복이다. 굳이 WMD라는 유식한 외래어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기록해 준다면 글쓰기 일반의 원리를 따라 괄호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 국제사회에 식량을 구걸하면서도 WMD(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

### 3. 어휘의 문법적 위치 정리

문법은 왜 필요한가? 문법은 본래 남의 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말과 글을 좀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속기사에게는 남의 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함과 아울러,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문자언어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일반인들은 일상의 문자생활에서 문법을 바르게 챙기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성과 증거성을 가지는 의회회의록은 문법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바르게 작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문법을 알아야 구두점도,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 1. 문법을 챙기려면 문법을 알아야 한다.

속기사에게 무슨 문법이 필요하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오랜 경험을 가진 현직 속기사 중에서도. 그러나 문법을 모르고는 문법을 바르게 챙길 수 없다. 속기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표준문법에 정통해야 한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표준문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의 우수성으로 인해 문법을 챙겨 주지 않아도 내용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법을 소

홀히 여기다가는 자칫 속기사 자신의 유식하지 못함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청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오류를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예문으로 문법의 중요성만 강조하고자 한다.

### <예문 1>

물론 형의 선고는 법원에서 할 일이겠습니까만 검찰에서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했다면 더 엄벌에 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밑줄 부분의 주어를 찾아보라. 법원인가, 검찰인가? 검찰이지 법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법적인 요소를 소홀히 했는지 내용 이해를 제대로 못 했는지 속기사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띄어쓰기가 잘못됨으로써 주어가 마치 법원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면,

→ ~ 검찰에서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했다면 ~

문법적인 안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청의 가능성이 훨씬 적다. 문법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설사 속기할 때는 오청을 했더라도 검토하는 과정에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 <예문 2>

이삼십년 전 판례를 이유로 해서인지 안 붙었다고 각하명령서가 본인에게 도달 안 됐더라도 효력이 있다가요.

말한 그대로 정확히는(?) 써 주었지만 내용에는 커다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동사 '안 붙었다고'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문법적 안목만 갖추었다면 속기사는 자신의 이해 부족을 충분히 눈치 챌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

→이삼십년 전 판례를 이유로 해서 인지(印紙) 안 붙었다고 ~

문법을 알면 문장구조가 보인다. 문장구조가 보이면 자신의 오청·오기를 발견

하기도 쉽다. 문법적 안목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오칭을 설명해 주어도 녹음기만 틀어 대는 경우가 많다.

### <예문 3>

저는 사실은 부패방지법을 만들 때부터도 신고자 보호라든가 보상체도가 미흡하지 않느냐, 신고자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신분보장을 해 주고, 예컨대 불이익 처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고용이나 여러 면에서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 불이익 처분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예문 3>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압축을 해 보면 ‘저는 ~ 여러 가지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의 간단한 문장구조이다. 무엇을 제한했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한’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함을 이내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제한’이 아니라 ‘제한’이다.

## 2. 어휘의 문법적 위치를 바로잡아 준다.

음성언어는 문법과는 상관없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굳이 문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으로 들어오면 어근 이해도 안 되고 내용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다. 속기록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법적 위치를 바로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예문 1>

①감사원도 고인 물이 썩는다고 지금 상당히 썩어 있다고 봐요.

→고인 물이 썩는다고 감사원도 지금 상당히 썩어 있다고 봐요.

‘감사원도’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이들은 다음 예문을 보라.

②장관계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미국 무역센터의 큰 건물처럼 우리의 모

는 국가기관, 우리 국가의 기틀이 무너진 것처럼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 나가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에 상응하는 서술어가 어느 것인가? ‘느끼고 있습니다.’인가? 아니다. 완전히 문장을 달리하여 다음 문장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 주어 ‘장관께서는’은 다음 문장 앞으로 옮겨 줌이 마땅하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미국 무역센터의 큰 건물처럼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 우리 국가의 기틀이 무너진 것처럼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를 바로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 나가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문 2>

어떻게 국정원장이 휴가비를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자기 돈으로 지급하면 되지요. 어떻게 그것을 국고수표로, 국정원 돈으로 바꿔서 지급했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부사 ‘어떻게’가 자칫 ‘바꿔서’를 수식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문장이다. ‘어떻게’가 수식하는 단어를 찾아 그 앞으로 옮겨 주면 그 내용이 명확해지고 문장도 자연스러워진다.

→ ~ 그것을 국고수표로, 국정원 돈으로 바꿔서 지급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 <예문 3>

우리나라에도 이제 청소년이나 많은 법학도들이 인생의 좌표로 삼을 만한 훌륭한 법조인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어쩌면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는 우리가 인색했거나 또는 법조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훌륭한 법조인’은 어불성설이다. ‘너무’라는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찾아 줄 필요가 있다.

→ ~ 어쩌면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인색했거나 또는 법조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문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전에 어느 의원이 주장하듯이 김대업이와 선호형이가 호송 도중에 서로 대화를 했다는 식의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지검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의 음성언어에서는 특정 어휘가 도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말한 순서대로 기록해 놓고 보면 위와 같이 말줄임표 같은 문장부호까지 동원해야 되는 수고를 하면서도 그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법적 위치만 찾아 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전에 서울지검에서 어느 의원이 주장하듯이 김대업이와 선호형이가 호송 도중에 서로 대화를 했다는 식의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 <예문 5>

지난번에 KBS 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5월 18일에 방영한 내용 중에 성남시장과 KBS PD가 그 당시 검사를 사칭해 가지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성남시장과 KBS PD' 들어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뜻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 반드시 문법적 위치를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될 대표적인 문장이라 하겠다.

→ ~ 5월 18일에 방영한 내용 중에 KBS PD가 그 당시 검사를 사칭해 가지고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 <예문 6>

문제가 없으면 애당초부터 값싼 국산 실리콘을 쓸 일이지 왜 값비싼 일제 실

리콘으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누출은 안 되더라도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등등을 고려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역시 밑줄 부분의 문법적 위치를 바로잡아 주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 ~ 지금 당장 누출은 안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 3. 중복된 말은 하나로 정리한다.

중복된 말이란 문장상 꼭 필요한 말이긴 한데 같은 문장에서 두 번 이상 나타나거나 다음 문장에서 쓰일 어휘가 앞 문장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는 선택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빼 주는 것이 좋다.

#### <예문 1>

① 지금 장외 발매소가 13곳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 지금 장외 발매소가 13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② 어떻게 국정원장이 휴가비를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자기 돈으로 지급하면 되지요. 그것을 국고수표로, 국정원 돈으로 바꿔서 지급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 국정원장이 휴가비를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자기 돈으로 지급하면 되지요. 그것을 국고수표로, 국정원 돈으로 바꿔서 지급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③ 이것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만 할 뿐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닌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것은 고발만 할 뿐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닌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문 2>

①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의 구조다. 동어 반복이 되어 무척이나 부자연스럽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MBC를 국감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거든요.

앞의 예문들에 비해서 본 예문은 경우가 약간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다. ‘하려는’과 음은 다르지만 결국 동어 반복으로 없어도 되는 말이다. 중복된 말로 보고 지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 MBC를 국감 대상으로 하려는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거든요.

③국가보안법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대표적인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이 들고 즉각 폐지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 이것 역시 동어 반복의 중복이다.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대표적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생각이 들고 즉각 폐지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3>

범민족대회라는 것은 북한이 벌써 50년 전 해방 후부터 계속 주장해 온 남북 민족연석회의→사회단체 간의 연석회의→범민족회의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통일전술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계속 주장해 온 ……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의 중복 구조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면 한결 간결해지고 이해도 쉬워진다.

→ 민족대회라는 것은 북한이 벌써 50년 전 해방 후부터 남북민족연석회의→사회단체 간의 연석회의→범민족회의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

#### <예문 4>

①노정국장 ○○○입니다.

②금융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위원들에게 답변자가 어떤 자격으로 답변하는지 자기 신분을 밝히는 행위이다. 또 그것은 속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자기소개가 어떤 회의록에는 한 차수에서도 같은 사람이 몇 번씩 나와서 반복한다. 답변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속기록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미 고덕체로써 답변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로써 족한 것이다. 처음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인사 차원으로 보아 기록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매번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것은 속기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종합검토 과정에서라도 지워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군더더기 말은 뺀다.

'군더더기'란 쓸데없이 덧붙은 것을 뜻한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 마, 이, 그, 저 따위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이다. 속기록에서는 이를 당연히 지워 주고 있다. 그러나 군더더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발원자 각자의 언어 습관에 따라 각양각색의 군더더기 말이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군더더기 말들이 때에 따라서는 문장의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지워 주어야 한다.

<예문 1>

이, 그, 저 따위 군더더기를 당연히 지워 주어야 하지만 아직도 이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앞 문장의 말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과감히 지워 주자. 다음 예문의 밑줄 부분에서 ‘그’나 ‘이’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①금품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이미 확인 취재한 그 모 방송국의 기자가 있다는 데 이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1990년대 초반에 그때 의 계좌추적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계좌추적을 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으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가 나간 일도 있습니다. 의 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남용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문 2>

①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뭘니까? 진정인이 진정취하 비슷한 진술서 하나 냈다고 해서 아무도 소환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에서 ‘뭘니까’는 질의가 아니다. 다음 말이 얼른 생각은 안 나고 하니 잠시 호흡을 조절하느라 무심코 한 말일 뿐이다. 발언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다. 이런 것까지 기록하여 독자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진정인이 진정취하 비슷한 진술서 하나 냈다고 ~

②그래서 가끔 고 대령이 왔을 때 그분이 뭘니까? 자기가 보고받는 이명현 씨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급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갔습니까?

‘고 대령이 왔을 때 그분이 뭘니까?’ 여기서의 ‘뭘니까?’ 역시 호흡 조절용이다. 이런 것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모두 기록함으로써 회의록의 이해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문이다.

→그래서 가끔 고 대령이 왔을 때 그분이 자기가 보고받는 ~

<예문 3>

물론 뭘 검사가 수사라든가 직무수행 중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보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참 명예 훼손하는 그 정도의 뭘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뭘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법에 호소하고 뭘 검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뭘’라는 군더더기 말을 무척이나 애용하고 있다. 또 ‘참’이라는 군더더기도 있다. 전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모조리 기록함으로써 속기록의 질적 수준을 잔뜩 떨어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예문이다. 동시에 이것은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의 질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문이기도 하다.

→물론 검사가 수사라든가 직무수행 중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보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명예 훼손하는 그 정도의 잘못된 보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법에 호소하고, 검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예문 4>

①기본급이 부족하였던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인원이 많았기 때문인데,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인원이 많았던 이유는 기능직공무원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운영내규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기능직공무원은 상위 등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그 상위등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②이 정리계획안에 반영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제199조, 제228조, 아래에 저희가 참고로 조문을 달았습니다.—제233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수정명령(제190조), 정리계획안의 배제(제199조), 또는 법원에서 정리계획안 불인가 결정(제233조)의 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다. 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잠시 안내를 하고 있다. ①에서는 현재 보고하고 있는 곳이 유인물 31쪽임을, ②에서는 검토보고서 하

단에 참고 사항이 게재되었음을. 이런 예는 특히 현황보고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위원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이다. 또 후세에 남길 가치도 없다. 이런 것까지 회의록에 남기면 속기사만 우스워진다.

#### <예문 5>

오늘 법안에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삼성 SDS 李健熙 씨 일가에 대해서 사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두 번이나 국세청에 대해서 7개월 전에 제보했는데 지금 국세청이 말이지요. 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중'이라는 회신 달랑 하나 보내고 7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상속세·증여세법개정별률안도 보니까 지금 무슨 취지지요?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뭐 합니까? 실제 말이지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말이지요. 8·15경축사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개정안만 이렇게 마련해도 되는 겁니까?

위 예문에는 중복되는 단어가 2개(대해서, 이렇게) 있고, '말이지요'라는 군더더기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마땅히 중복을 정리하고 군더더기를 빼야 한다.

→오늘 법안에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삼성 SDS 李健熙 씨 일가에 사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두 번이나 국세청에 대해서 7개월 전에 제보했는데 지금 국세청이 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중'이라는 회신 달랑 하나 보내고 7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증여세법개정별률안도 보니까 지금 무슨 취지지요?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뭐 합니까? 실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8·15경축사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개정안만 마련해도 되는 겁니까?

#### <예문 6>

일단 불법으로 판정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지키다고 해서 고발하게 되면 그 안 지키는 업자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안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음란물 반포를 했던 주범에 비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점은 균형의 면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예문은 발언자가 “그 안 지키는 업자가…” 하면서 중얼거리듯 ‘모르겠어요’라는 군더더기 말을 내뱉은 경우이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말한 그대로 “그 안 지키는 업자가 모르겠어요.”라는 식의 한 문장으로 완결해 놓았으니 독자들은 내용 파악이 쉽지 않게 되어 버렸다. ‘모르겠어요’를 군더더기로 치부하여 빼 버려도 좋겠으나, 이를 굳이 의미 있는 어휘로 보아 살려 주고자 한다면 앞뒤에 반점을 썼어야 했다. “그 안 지키는 업자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서 ~ 안 지킬 수도 있고” 식으로. 그러나 필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군더더기로 보아 과감히 삭제할 것을 권한다.

→ ~ 그 안 지키는 업자가 굉장히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안 지킬 수도 있고 ~

5. 고쳐 말한 것은 고쳐 말한 것만 적는다.

<예문1>

**왜 이 문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뭘니까?**

‘왜’로 시작했지만 ‘왜’와는 상관없이 ‘이유가 뭘니까?’로 끝맺고 있다. 뒷부분에서 고쳐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해도 속기사는 마땅히 ‘왜’를 기록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가 수식하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예문 2>

서울지점에서 내사를 마치고도 기소하지 않고 갖고 있는 김대업의 최근의,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병무비리 사건이 96년 당시에 8000만 원 수수 건이 포함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의’라고 말하려다가 이를 ‘그러니까’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하면서 ‘최근 몇 년간의’로 고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 말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 김대업의 최근 몇 년간의 병무비리 사건이 ~

### <예문 3>

오늘 의무소방대, 소방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의무소방대라도 해 가지고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예문 역시 마찬가지다. ‘의무소방대’라는 어휘를 먼저 사용하였다가 이를 잠시 뒤로 미루고 ‘소방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의무소방대’라고 고쳐 말하였다. 마땅히 앞의 ‘의무소방대’는 지워 주어야 한다.

→오늘 소방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의무소방대라도 해 가지고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

## 6. 어미변화를 바로잡아라

‘찾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자연스럽지만 ‘예쁘는 사람’ 하면 사람들은 금방 어색함을 느낀다. 그것은 ‘찾다’는 동사요, ‘예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형용사 중에는 그 구분이 애매할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맞다’이다. ‘알맞는’이라는 어색한 어미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 속기록에서는 마땅히 ‘알맞은’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다음의 예문들에서도 그런 어휘들이 나타나고 있다.

### <예문>

①최근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걸맞은)

②너무 짚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 측의 반대의견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잡은)

## 7. 명백히 잘못된 말은 고쳐 주어야 한다.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발언자가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명백히 잘못된 말’은 왜 고쳐 주어야 하는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 이것은 연설을 잘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천사-악마처럼 정반대의 단어를 계속적으로 바꾸어 쓰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식한 발언과는 다르다. 의식한다면 분명히 바르게 교정하여 말을 할 것이다.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말은 이를 교정하면서 듣는다. 속기사 역시 이를 교정하면서 들어야 할 것이고 또 교정하여 들은 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무의식중에 구사한 말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발언 의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교정하여 기록하기가 미묘한 경우도 있지만 경험 많고 유능한 속기사는 그 차이를 알 것이다.

### <예문 1>

정말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데서 단속을 해야 되고 무인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기 위해서 김해공항을 갑니다. 발산동에서 김해공항 가는 쪽을 보면 옛날에 비상할 주도로 쓰기 위한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항로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넓은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기준이 시속 60km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을 무심코 ‘김해공항’으로 발언한 경우이다. 이런 것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속기사가 발언 내용도 모른 채 ‘말하는 대로’만 기록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예문 2>



이번 방북단의 성격이 범민련이나 한총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난날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외치고, 이북의 여러 가지 구호를 그대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면 그런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안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 마치 국가보안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 뉘앙스다. 그러나 한총련이나 범민련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는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는 뜻일 터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가 더 적합하겠으나 이런 미묘한 문제는 당시에 속기사가 이를 인지하고 발언자에게 연락하여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다.

## 9. 줄 바꾸기

### <예문 1>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해 상습지 개선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99년의 경우에 1200억 원, 올해의 경우에 2050억 원입니다마는 내년에 2800억 원으로 해서 올해 대비 37%가량 증액했습니다.

위 예문은 일문일답에서 답변의 전문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줄을 바꾸어 놓았다. 문장의 줄을 바꾸는 것은 내용이 바뀌거나 문단을 달리할 때이다. 속기사는 두 문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일까. 이것은 ‘요’만 나오면 종결어미로 알고 무조건 마침표를 찍는 데서 초래된 오류이다. 그러나 ‘요’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상대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위 예문에서는 ‘-니테+요’의 구조이므로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다. 문법적인 요소를 구분할 줄 모르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해 상습지 개선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99년의 경우에 1200억 원, 올해의 경우에 2050억 원입니다마는 ~

줄 바꾸기는 물론 문단과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급적 말한 대로 써 주어야 하는 의회회의록의 특성상 내용이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는 것이 어색할 때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안의 제안설명 때 흔히 나타난다.

## <예문 2>

먼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용 중인 별정우체국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원의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둘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근무상한연령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무원연금에 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증감하고 공무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연금 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설명에서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첫째~셋째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넷째~다섯째 내용은 줄을 바꾸어 또 다른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둘째 내용이 연결어미로 이어지다가 셋째 내용은 종결어미로 끝을 맺고 있고, 또 넷째 내용은 다시 연결어미로 이어지다가 다섯째 내용 또한 종결어미로 문장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의회회의록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색하

기 짝이 없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안>우리는 의회회의록을 작성할 때 어디까지나 독자들 입장에서 독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 위 예문의 경우에는 첫째부터 다섯째 내용을 모두 줄을 바꾸어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연결어미 다음에 문장의 줄을 바꾸어 기록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모든 회의록에서 법안의 제안설명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록을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용 중인 별정우체국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원의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둘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근무상한연령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무원연금에 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증감하고 공무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연금 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4. 문체의 변용과 한계

문체란 흔히 문장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구어체, 문어체, 논문체, 서사체 따위로 나뉜다. 또 한편 문학에서는 문장의 어구·어법·조사(措辭)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작자의 개성을 문체라고 한다. 속기록은 양식상 당연히 구어체이다. 그런데 속기 업무에서 문체를 바르게 챙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각자의 출신 지역이나 생활환경, 지식수준, 소양에 따라 특유의 어투가 있기 마련이다. 그 어투란 발원자 고유의 어법과 어휘, 억양과 같은 언어 표현의 개성적인 특성을 말한다. 문체를 바르게 챙긴다는 것은 문법적 요소를 고려하되, 바로 그러한 발원자 특유의 구어체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완전히 문어체로 바꾸어 의원들의 언어 특성을 규격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문 1>

- ①도대체 가능하다는 것인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②97년 7월에 워선의 지시로 모든 자료가 폐기됐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 ③수사가 진행 중이든 어쨌든 간에 증인신문 때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 세 개의 예문은 발원자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속기록상의 어투나 분위기는 마치 한 사람의 발언인 것처럼 똑같다. 발원자의 특색이 없는 것이다. 속기사가 기계적인 수문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본래의 음성언어를 그대로 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도대체 가능하다는 건지 불가능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 ② ~ 모든 자료가 폐기됐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 ③ ~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발언자의 개성이나 발언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대개 서술어 부분이다. ‘-겁니다.’ ‘-다는 말이에요.’ ‘-는데요.’ 등. 그런데 문법적인 안목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특색을 못 참고 꼭 고쳐 주는 이들이 많다. 예문에서와 같이 종결어미를 ‘-습니다.’ 일색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 발언자 특유의 어투는 사라져 버리고 문어체에 가까운 문장이 되어 버리게 된다. 깔끔하게 다듬어 준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회의장의 분위기나 발언자의 개성까지 전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또는 문법적으로는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한 이러한 구어체의 특성은 살려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은 그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수문을 하고 있다.

### <예문 2>

그 당시 진술서라는 것은 메모용지가 아니고, 인쇄로 줄이 딱딱하게 다 쳐져 있는 제대로 된 진술서예요.

여러 내용을 한 문장에 담고 있는 만연체의 발언이다.

그러나 실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그 당시 진술서라는 것은 메모용지가 아닙니다. 인쇄로 줄이 딱딱하게 다 쳐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술서예요.

발언자는 짧게 간결체로 말을 했다. 그런데 속기사는 길게 한 문장으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만연체의 문장이 되어 버렸다. 발언자의 개성은 완전히 무시된 수문이다. 발언자 특유의 간결하고 딱딱 찌르는 맛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처럼 간결하고 명쾌한 음성언어는 문자언어로서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수문을 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예문은 이와는 또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수문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 <예문 3>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자유의 폭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는 또 한편 경제 활동에 대한 침해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수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체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 문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아래 원래의 음성언어와 비교하여 그 분위기를 비교해 보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자유의 폭의 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래서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는 또 한편 경제 활동에 대한 침해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긴 문장이기는 하나 논리를 점층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단문의 연속이다. 음성언어를 그대로 옮겨 놓았어도 그 자체가 문법적으로도 완벽하여 손뼉 데가 전혀 없다. 굳이 또 다른 서술어와 접속부사까지 동원하여 문장을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문을 하더라도 이런 피곤한 작업은 하지 말 일이다.

#### <예문 4>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총경급 이하 경찰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100만 원만 받고 해도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 총경급 이상은 어디에서 돈을 구하는지 과거부터 내려오던 상납구조가 현재 전혀 변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이 사건의 핵심이 ①있는데, 지금 장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나모 총경이 돈 6700만 원을 상급자에게 상납했고, 그 돈을 받은 관련 간부가 총 6명이고 6명 중에는 치안정감 1명, 그리고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2명, 경무감 3명으로 되어 ②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투서가 되었는데 당시 감찰조사를 받은<sup>12)</sup> 경찰청 감사

12) '하던'의 요청

관실의 하모 감사관, 이분이 직접 상납받은 당사자인데 나모 총경을 직접 감사했습니다. 상납받은 당사자가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엉뚱한 해프닝이 ③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주 가벼운 징계로 처리되고, 소위 없던 일로 무마되어 버렸습니다.<sup>13)</sup>

상당히 긴 발언인데 문장상에 나타난 마침표( . )는 단 2개뿐이고, '-는데-'라는 어미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계방송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본바, 속기사가 몇몇 곳에 손을 댔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손댄 부분을 살리고 오청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읽어 보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총경급 이하 경찰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100만 원만 받고 해도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 총경급 이상은 어디에서 돈을 구하는지 과거부터 내려오던 상납구조가 현재 전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이 사건의 핵심이 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나모 총경이 돈 6700만 원을 상급자에게 상납했고, 그 돈을 받은 관련 간부가 총 6명이고 6명 중에는 치안정감 1명, 그리고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2명, 경무감 3명으로 되어 ②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투서가 되었는데 당시 감찰조사를 하던 경찰청 감사관실의 하모 감사관, 이분이 직접 상납받은 당사자인데 나모 총경을 직접 감사했습니다. 상납받은 당사자가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엉뚱한 해프닝이 ③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주 가벼운 징계로 처리되고, 소위 없던 일로 무마되어 버렸습니다.

'-거든요.'라는 종결어미를 모두 '-는데'라는 연결어미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6개의 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압축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대체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 놓았다. 자연히 발언자 특유의 어투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

13) 제232회 제8차 본회의

이것은 수문이 아니다! 글자 몇 자 덜 쓰자고 발언자의 개성을 죽여 놓고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답답함만 더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수문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수문을 하려고 덤비기보다는 자신의 오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예문 5>

우리 군이 그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탱해 왔는데 소위 일부 친북·연북 세력들은 그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극언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친북·연북 세력들! 아주 단정적이다. 그러나 원래의 음성언어대로 복원해 놓은 것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 ~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탱해 왔는데 소위 일부 친북·연북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극언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친북·연북 세력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여운을 남기는 발언이다. 그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수문을 가하더라도 언어의 뉘앙스에 주의해야 한다. 몇 자 덜 적자고 함부로 수문이란 걸 하지 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 <예문 6>

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화의나 법정관리 업체의 채무이행현황, 각 업체별 인가일시, 인가 시 채무총액, 현재의 채무 증감액 자료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역시 답해 왔습니다.

화의나 법정관리 업체가 당초 채무가 얼마인데 그 과정에서 채무의 증감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화의나 법정관리를



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또 끝내려는 것인지 자못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료나 통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있는데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의 밑줄 부분을 읽어 보라. 그리고 아래 원래의 음성언어대로 살려 놓은 것과 비교하여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에서 ‘이런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라.

→ 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화의나 법정관리 업체의 채무이행현황, 각 업체별 인가일시, 인가 시 채무총액, 현재의 채무 증감액 자료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역시 답해 왔습니다.

화의나 법정관리 업체가 당초 채무가 얼마인데 그 과정에서 채무의 증감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화의나 법정관리를 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또 끝내려는 것인지 자못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구어체의 음성언어에서는 ‘~느냐, 이런 것이’ 또는 ‘~없다, 그런 얘기가’ 식의 발언이 많다. 이런 경우 속기사들 중에는 기계적으로 ‘~느냐 하는 것이’ ‘~ 없지는 얘기가’로 바꾸어 주는 이들이 많다. 그렇게 바꾸어 주어도 발언 내용은 거의 변질되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했듯이 그러한 기계적인 수문은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발언자의 개성이나 회의장의 분위기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예문 5>에서처럼 발언의 의도를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 예문에서도 원래 속기사가 수문한 대로 두어도 의미가 전혀 안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에서 ‘이런 것’은 앞 문장의 ‘관련 자료의 확보’를 받는 말이다. 따라서, 굳이 수문을 가하려 했다면 그 의미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문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 ~ 화의나 법정관리 업체가 당초 채무가 얼마인데 그 과정에서 채무의 증감

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관련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화의나 법정관리를 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또 끝내려는 것인지 자못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5. 청취능력과 정확성의 상관관계

수문에 있어서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성은 이런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에 속기사는 자신의 오청·오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담뽕'을 말한 그대로 '바담뽕'으로 기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뽕'조차도 '바담뽕'으로 오청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전문 직업 속기사로서는 치명적인 무능력자라 할 것이다.

청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수고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다. 속기사가 기능인이기 전에 지식인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청취능력은 어휘력에 비례한다.

어휘력은 일차적으로 우리말 어휘를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그 쓰임새를 바로 아는 것을 뜻한다. 일상의 평범한 말인데도 막상 속기록을 작성하려면 헛갈릴 때가 많다. 신속성에만 치우쳐 마치 '작업'을 하듯이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의 적합성을 음미하면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되면 이런 오류는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잘못 기록한 단어들을 찾아보며 자신의 어휘력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 <예문>

①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진대 앞으

로 원격 무선조정에 의해서 무인 항공기로 공격해 온다든지 또는 세균살포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테러공격이 예상됩니다.

②입찰경쟁을 통하여 낙찰받았다 해도 과외돈이 많이 들어가면 급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역시 부실 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③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수사에 정치적인 간섭이 게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④K모 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장급 다수가 정 씨와 호형호제하면서 인사 때마다 그를 통해서 줄을 대고 있고 심지어는 K모 전 법무부장관도 그 라인의 천거로 장관이 된 후에 정 씨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1개월에 한 번 정도 여권 실세의 원 사택을 방문하는 등으로 연명해 온 사실을 많은 검사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정의 농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⑤관계있는 사람을 제켜 놓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중간보고할 수 있어요?

⑥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다수의 중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⑦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정비 문제는 남북 관계 진전 사항과 국가안보 현실 등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⑧하지만 범의가 없는 사람을,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나중에 붙잡힌 피해자가 자기 동료 전과자로부터 핸드폰으로 만나질 동안에 30여 차례의 범죄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⑨산재율 1% 이하로 내려와서 선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하는 장관의 말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⑩해양수산부에서 매장물 발굴승인서 내줄 때 추정 매장량이 금케 30kg이에요. 이것을 문화재급 유물 및 금케 약 2000t에 20조 원이라고 하여 그 많은 선량한 소액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⑪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장부를 금년 3월에 들어서야 기부금으로 정정했던 말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재단의 수익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부 짜고 하

는 것이예요.

⑫40여 명에 이르는 막강한 진영으로 정예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⑬지금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상가임대차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를 적용 범위로 해야 될 것인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⑭현재 수도권통합병원 분양소에는 병원 출입구와 별도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안내장병을 배치해 조문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⑮군에서는 비밀의 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작전 조치와 세계군사연감 등에 이미 수록된 무기체계 관련 자료에 국한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일부 사항은 노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작전보완에 적극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⑯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의료업계와 약사업계가 참여한 이해관계 속에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의약분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⑰정부는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부고속망으로 연결하는 등 전자정부의 기반을 그동안 착실히 구축해 왔습니다.

⑱결산보고서에는 정부 등의 결산에 대한 확인 내용과 함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내용, 그리고 대상 기관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 상황 등을 계기하고 있습니다.

⑲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에 의하면 표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요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거의 같거나 유사합니다.

⑳작업중지권을 요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수단으로 이런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예문들의 오칭 부분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무선조정→무선조종 ②과외돈→가외돈 ③계재될→개재될 ④국정의 농간→국정의 농단 ⑤제켜 놓고→제쳐 놓고 ⑥다수의→다소의 ⑦진전 사항 →진전 상황 ⑧피해자→피의자 ⑨거리→피리 ⑩금궤→금괴 ⑪수익금→수입금 ⑫막강한 진영→막강한 진용 ⑬총격을→총격을 ⑭분양소→분향소 ⑮작전보완→작전보안 ⑯이전 차이→의견 차이 ⑰정부고속망→정보고속망 ⑱계기하고→계기(偈記)하고 ⑲구속요건→구성요건 ⑳요하고→위요하고

**(2) 청취능력은 이해력에 비례한다.**

이해력이란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아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단어의 속어적 의미, 즉 관용적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단어의 관용적 의미를 모를 경우 정확한 발음도 오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음 예문들 또한 앞뒤 내용을 짚어 보면 충분히 오류를 피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들이다. 오칭한 단어를 찾아보기 바란다.

**<예문>**

①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동료의원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한 건씩 전부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명거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 지역의 당선자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지역 유권자들은 더구나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②불법선거사범은 소속정당·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형 선거로 당선 만능 의식을 불식시키고, 선거정국에 편승한 집단행동 및 불순세력의 선거방해 책동에 엄정 대처하고, 사회기강 확립 및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③과거 대량 생산해서 수출까지 되었던 굴 양식이 최근에 와서 많이 감소하고 있고, 존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④잉여자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학력,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제2국민역

으로 역종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⑤사기, 횡령 배임이 45건인데 특히 절도 강도가 장교 사이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⑥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가양대교 및 한강 둔치 지하수를 특정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기준치 6ppm보다 5배가량 높은 29.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⑦검찰 마약수사반의 용의자 5인 또 체포 후의 구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⑧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발생한 4건에 대해서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면 모두 구속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용자 측에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⑨이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도 모르게 경질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사회예요.

⑩인재 등용할 때 남녀 선별해서 동등할 수 있도록 채용해야지

⑪항상 사법부의 발전과 계획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⑫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는 이때일수록 저쪽은(필자 주: 북한은) 내부 결속 시키는 방향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합리적인 선택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당국자들은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초기의 어떤 편견의 비달에서 보시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⑬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한—금지금이라는 것은 일반에서 말하는 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⑭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런 식의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해 가지고 일한 실적이 신문에 자동적으로 보도되고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가 강화되고 신장되고 성장되도록 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중략)- 광고를 내는 식으로 국가기관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국정운영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⑮새털같이 많은 날,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⑯법조문은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르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⑰책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문제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평화적 원자력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을 허가하자는 것입니다.

⑱최근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로펌들의 몸짓 불리기 현상과 관련해서 젊은 판사들에게 전직을 유도하는

⑲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에 매달려 騎虎之勢의 대중적 처방만을 계속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⑳공익을 현저히 행한다는 것이 해석상 상당히 모호한 분야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각이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①실명거래는→실명거론은 ②형 선거로→형 선고로 ③존폐를→종패(種貝)를 ④보충역, 편입연도→보충역 편입연도 ⑤장교 사이에서→장교 사회에서 ⑥가양대교 및 한강 둔치→가양대교 밑 한강 둔치 ⑦용의자 5인→용의자 오인 ⑧최근 발생한 4건→최근 발생한 사건 ⑨정치적인 사회예요.→정치적 인사예요. ⑩남녀 선별해서→남녀 성별에서 ⑪사법부의 발전과 계획을 위하여→사법부의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⑫비달에서→빛 아래서 ⑬금폐를→금괴를 ⑭신장되고 성장되도록→신장되고 선전되도록 ⑮새털같이 많은 날→쇠털같이 많은 날 ⑯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르고→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르고 ⑰사용을 허가하자는 것입니다.→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하자는 것입니다.⑲대중적 처방→대증적(對症的) 처방 ⑳공익을 현저히 행한다는 것이→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는 것이

(3) 청취능력은 지식수준에 비례한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속기사야말로 지식인이어야 한다.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서

다. 평생학습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속기 업무임을 명심할 일이다.

<예문>

- ①미군부대의 주둔군 지휘협정에 관한 여러 가지 민사상 계약의 문제나
- ②8월 16일 범민련 남북해외3차협의회를 개최했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③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를 신축하면서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활주로 일부에 관제 4각지역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도
- ④제 대별로 지휘관용, 병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교재를 발간하고
- ⑤형벌에서는 구속요건 해당성과 입법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 ⑥수감자가 수사관 행세를 하며 조사한 사건에 대해 위법소지증거의 배제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입니다.
- ⑦미국의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AFL, CIO처럼
- ⑧중국 문화권과 일본 문화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마치 이것이 1차 전쟁 이후의 상태 그러니까 주로 갑오경장 이후의 상태와 비슷하게 갈 것이 아니겠느냐
- ⑨현재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대부분 부도난 업체나 하위업체나 워크아웃 업체는 이런 시급히 처분해야 될 자산이 많은 부실 또는 정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한을 가하면 결국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형태로는 이 매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⑩과거 3공, 5공, 6공 때 프레블로호 납치사건, 아웅산 폭발사건, 그리고 미루나무 판문점 도끼사건,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 ⑪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행위는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과 미국 제네바기본합의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 ⑫우리 경제가 죽어야 할 환자입니까, 아니면 실업용 모르모트입니까?



- ⑬구운몽은 부패했고, 김씨啓女史 등은 좀벌레로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 ⑭법무부에서 횡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횡령 업무라는 것이 제소자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⑮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라든지 화의 중인 기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도덕적 회의에 빠져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불법으로 자금을 유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⑯일부에서는 한전을 성역화하면 7600억인가 흑자 낸 것이 배를 낼 수 있다는 얘거든요.
- ⑰GNP가 증가하면 빚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부지출의 투자승수가 1도 안 되고 0.8%밖에 안 되었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즉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⑱사고의 원인은 책임집기 수표발행기와 지출계획서상의 금액대조는 물론 계획서 작성이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결재해서
- ⑲위와 같은 유형의 영구매각은 대개 5년으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영구매각은 매각 일자하고 매각대금 완납일자가 장기간에 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⑳그건 불법의 극치입니다. 가사 거기에서 무슨 증거, 진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독소의 과실입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 봐야 무효입니다.

-----

①지휘협정→지위협정 ②범민련 남북해외3차협의회→범민련·남북·해외 3자협의회 ③4각 지역이→死角 지역이 ④제 대별로→제대(梯隊)별로 ⑤구속요건→구성요건, 입법성→위법성 ⑥위법소지증거의 배제원칙→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⑦FLC, CIO→FLC-CIO ⑧1차 전쟁→일청전쟁 ⑨하위 업체→화의업체 ⑩프레블로호→푸에블로호 ⑪미국 제네바기본합의→미·북 제네바기본합의 ⑫실업용 모르모트→실협용 모르모트 ⑬김씨啓女史→金氏戒女詞 ⑭횡령 업무→行刑 업무 ⑮도덕적 회의→도덕적 해이 ⑯성역화하면→성력화(省力化)하면 ⑰0.8%밖에→0.8밖에 ⑱책임집기 수표발행기와→責任職이 수표 발행고와, 결재해서→결제해서 ⑲영구매각은 대

개 5년으로→연부매각은 대개 5년 연부로, 영구매각은 매각일자하고→연부매각은  
매매계약 일자하고 ㉔→독수의 과실-毒樹의 과실

## IV.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앞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회의록의 정확성은 첫째로 속기사의 실력과 비례한다. 나아가서는 업무 자세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속기사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독서로 어휘력과 이해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아래 각 소제목하에 소개되는 예문들은 속기사의 불성실한 업무 자세로 인해 속기록의 정확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들이다.

### 1. 생각하는 속기를 하라

속기 원고에서 오칭이나 오역을 잡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어휘가 끼어들어 가 있는데도 말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뒤 문맥이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발언 내용 자체가 어불성설로 느껴질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상에 나타나는 어휘의 적합성 여부를 찬찬히 음미해 보거나, 조금만 상식을 동원하여도 이내 그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어불성설이 속기록에는 심심찮게 나타난다. 들리는 대로 생각 없이 문자화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발언 내용을 이해하면서 기록하는 자세가 아쉽다. 속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각 없는 속기를 하는 데서 초래되는 것들이다.

#### <예문>

①법정이자를 대법원법에 보면 60%에서 90%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사채의 경우 최고 200% 아닙니까?(→대부업법에 보면)

②82년도에 6공 때 만들어 놓은 금융실명제법 10조에 보면 자금출처, 가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자금은 일체 조사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82년도 5공 때)

- ③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 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한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이 95년 1월에 헌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95년 1월에 원법 개정으로)
- ④ 동서독은 교전국도 아닙니다. -(중략)- 그것도 한 40여 일이 걸려서 다가서기도 쉬웠고 또 그렇게 해서 통일도 되었지만(→한 40여 년이)
- ⑤ 충효라는 것은 원래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는데(→농업사회)
- ⑥ 지금까지 정부는 유신헌법 이후에 국회의원 임명절차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부터 崔圭夏 총리서리부터 서리가 임명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열세 분 정도의 서리가 있었습니다.(→국무총리 임명절차, →75년의 崔圭夏 총리서리부터)
- ⑦ 전파문화에 탐닉된 청소년! 이것이 우리 정책의 왜곡지대로써 청소년들만의 별도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외곽지대로서)
- ⑧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세금을 사용하는 행정부에서 그것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본다면(→또는 세금을 사용하는 행정부를)
- ⑨ 국민들이 보기에 이 이전대책과 그에 따르는 시기, 장소,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소의 체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해소책에 대해서)
- ⑩ 햇볕정책이 담고 있는 전략적 철학적인 무게를 지나치게 경시해서 마치 어린이들이 장난치는 취급해서(→어린이들의 장난처럼 취급해서)
- ⑪ 특허법원의 안내 책자를 한문과 영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안내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한글과)
- ⑫ 지역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전 충청북도지사, 지역 언론사인 동아일보사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청주시의회 의장 등의 범법행위를 적발해서 구속처벌하였으며,(→지역언론사인 동양일보사주)

⑬현재 유천동에는 유흥주점 69개 업소에 430명의 윤락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2001년 12월부터 유흥주점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곳으로 군산 등 타 지역의 업소가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소가 창문을 없앴다는 점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경부터 윤락업소 밀집지역 건너편에 버드네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업소에서 창문을 막은 바는 있으나 감금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버드네 아파트)

## 2. 법조문은 반드시 확인하라

국회속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들이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정확하게 인용한다 해도 정확하게 청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법률명까지 바뀔 때가 있다. 따라서 법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아무리 청취력에 자신이 있어도 반드시 법전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예문>

①감사원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 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한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이 95년 1월에 원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규정에 불구하고, →종사하는 자는)

②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 따르면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경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9조 1항, →제69조 2항)

③한전의 정보통신사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한전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목적의 사용량과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5조 제6조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기통신기본법 제21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과)

④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⑤감사원법 제14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관계인 또는 증인을)

⑥작년에 통과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⑦재결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법 34조 제1항에 보면 재결기관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재결기간)

⑧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등에 보면 이를 쫓아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 의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의)

⑨지금 행정심판이 크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종류 심판의 청구건수와 처리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크게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⑩이 소장에서는 현행 유료도로법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 큰 이익을 얻거나 그 부분에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신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 부근에)

⑪또 하나는 행정심판법 34조 제1항에 보면 재결기관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재결기간)

⑫다만 헌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행정각부 조직의 설치, 조직 권한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행정각부의 설치·조직·권한행사는)

### 3. 모든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라

발언 내용 중에는 현황보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인용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것은 현황보고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발언자가 정확히 인용하지 않고 변죽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속기사가 오청하는 수도 있다. 이를 무시하고 들리는 대로 혹은 말하는 대로 문자화해 놓게 되면 속기록에는 그 오류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음성 언어는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라.

<예문>

①국내의 부패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국내외)

②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니까 2786건인데 이 중 구금시설이 37.1% (37.2%), 경찰 29.5%, 검찰 등 그래 가지고 검찰, 경찰 구금시설의 진정사건의 비율이 78%에 달합니다.(→검찰, 경찰, 구금시설의)

③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신고 접수, 제도개선, 권고, 그다음에 교육·홍보와 시책수립과 평가하는 4대 기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신고 접수, 제도개선 권고, 그다음에)

④도서의 생활개선을 위한 용수·의료 등 지원 시책 운영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도서민 생활개선)

⑤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조선 제4대 세종대왕과 소현왕후를 모신 합장릉입니다. (→소현왕후)

⑥북에는 저희와 같은 기관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있고, 정무원 총리 직속

의 국가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국가사정위원회)

⑦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연안오염방지대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87개소 분뇨처리시설 3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하수종말처리시설 87개소, 폐수처리시설 37개소, 분뇨처리시설 30개소가 있는데)

⑧연구과제를 보니까 15건 중에 세제개편은 12건이고 나머지 전부 다 기타입니다. 3건이 다른 것입니다.(→25건 중에 세제에 관한 것은 12건이고, →13건이)

⑨재정수입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9대 중점추진방향)

⑩근간에 대한변협 인권관계의 회지에 모 변호사가 기고를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인권과 정의』 회지에)

⑪구속영장 청구 현황은 청구건수가 3629건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72건이 늘어나 18.7%가 증가되었고, 그 중 구속영장 발부율이 90.2%이며, 피의자 신문율이 92.7%입니다. 구속적부심사 현황은 접수건수 534건 중 석방명령 250건으로 석방률은 47.2%이며, 보석청구사건의 허가율은 항소심 47.9%, 제1심 44.9%입니다.(→신문율이, →533건)

⑫민사본안외사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신청사건은 10%가 증가하였고, -(중략)- 민사조정 심리건수는 전년 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민사조정 성립건수는)

⑬김대업과 선호영이 같은 사동, 같은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습니다.(→선호형)

⑭임창렬이 경기지사를 하면서 1억을 받고 주애란이 4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간이기도 한데 공모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기소가 되었습니다.(→주혜란)

⑮신효순 양과 신미선 양의 참사는 정말 커다란 비극이었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심미선)

⑯감사원에 아마 이시영 원장 계실 때 2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다가 그렇게 보고할 만한 중요 사항이 없어서 韓勝憲 원장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하셨다고 합니다.(→



李時潤 원장)

⑰항고사건은 1354건을 접수하여 1158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내역은 공소제기명령 사건, 주문변경 1건, 재기수사명령 132건, 항고기각 1021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공소제기명령, 재기명령률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공소제기명령 4건)

#### 4. 유사음 이의어에 유의하라

유사음 이의어야말로 생각하지 않는 속기를 하는 이들이 비켜 갈 수 없는 오류의 함정이다. 평소 문장상 어휘의 적합성을 꼼꼼히 음미하고 발언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문>

①검찰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수를 쓴다든지 꼼수를 쓴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탈법을 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사술을)

②사실 안기부 자금 사건은 세금이 유용된 전 국세청 차장 사건과도 괘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괘를 같이한다고)

③금융기관에는 재경원 출신 관리들이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습니다.(→관료들이)

④당시 야당 총재의 예금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경위와 그 추적 결과가 공포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공포된)

⑤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에는 이후락 씨 같은 분이 평양 갔을 때 이것을 보안법 위반 아니냐 해서 소위 대통령의 통치권의 일환으로 정당화시킨 때가 있었습니다.(→통치권 이론으로)

⑥일반적으로 변전소를 설치할 때는 인가가 드문 곳에 설치합니다.(→인가가)

⑦KDI나 국내 재정학회에서까지 근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토초세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세연구원에서는 투기업체에 대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한마디 외에...(→투기억제를 위해서)

- ⑧공기업 민영화를 다루는 부처들 또한 가급적 연기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다른 부처들)
- ⑨정책세미나 및 협의회 교제비는 41.3%, 연구 부대사업비는 47.6%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개최비)
- ⑩도청은 고사하고 영장에 의한 감청도 남발되고 있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어떻게 도청이라는 것이 공무원에게 용인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감찰해야 됩니다.(→공공연하계)
- ⑪여러 가지 중요한데 애써 균형을 잡느라고(→중요한 데가 있어)
- ⑫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항의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고(→韓日을 포함한)
- ⑬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강화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위치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분단의 영구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의 입지라는 것은)
- ⑭꼭 기증자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름을 넣을 수도 있지만 특설관호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館,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特設館을)
- ⑮그것은 사장의 공로라기보다는 한전 직원들이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내어서(→현장 직원들이)
- ⑯우리의 청소년 나아가서 우리 2세들의 의식의 개혁, 정신적인 재정립, 이래 가지고 국민의 수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국민의 수준 향상에)
- ⑰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이 이후로 청소년 육성정책을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기본계획으로)
- ⑱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농어촌 건설,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권, 생산기반 조성,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 ⑲김 위원님께서 지사 재임기간 중 지역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기업 유치를 통한)
- ⑳이번 비자금 수사를 통하여 검찰권은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의 하수꾼이 아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사품이)

## 5. 잘못된 발음이나 음운현상에 유의하라

사투리 발음이나 구개음화, 자음접변 등 우리말 특유의 음운현상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역시 발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어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다.

<예문>

- ①인권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과잉법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과잉입법)
- ②북한 핵무기 개발문제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영내 안정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역내 안정과)
- ③장관께서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2010년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BI 회원국인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잠시 후 오후 비행기로 출국하시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BIE 회원국)
- ④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능적 저장물로서 특성상 변경 또는 개작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저작물로서)
- ⑤불용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부 관계자의 횡령행위이며, 그 돈은 작물에 불과합니다.(→장물)
- ⑥이것은 특명조사단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양도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일도 양단)
- ⑦특별진상조사단에서는 군 수사 결과와 의문사의 조사 결과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의문사위-疑問死委)
- ⑧증원되지 않은 인력으로 작년에도 이를 잘 처리했습니다.(→일을)

⑨국무총리서리제도에 관한 법적·이론적인 증명에 관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확실하게 답변했습니까?(→측면에 관해서)

⑩현재의 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위기 타개를)

⑪한미일 3국 공조방안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연합과의 국제적인 협력 확보에 대한 국제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 방안은)

⑫9월부터는 형사항소사건이 적체됨에 따라서 수석부에서 한시적으로 형사항소 업무를 분담하는 등 재판보증서를 통한 신속한 재판과 심리의 충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재판부 증설을 통한)

## 6. 조사를 바르게 챙겨라

우리말은 교착어로서의 특성상 조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밝혀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사는 언뜻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사의 오역이나 오청은 발언 내용 전체의 의미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 역할이 작지 않다.

### <예문>

①사실 홈페이지를 만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목적 중의 하나)

②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사경에 해매는 상태에서도 빨리 외부 조치를 안 해서 결국 죽고 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사경을 해매는)

③지금 사장 얘기는 5월부터 7월까지 80%를 출력을 낮췄다가 8월부터 지금까지는 출력을 100% 올렸다(→80%를, 100%로)

④일부에서는 한전을 성력화(省力化)하면 7600억인가 흑자 낸 것이 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흑자 낸 것의 배를)

⑤업계는 업계대로, 근로현장은 현장대로,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정부대로)

⑥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적인 논리로 간파하고 너무 방만하게 해 오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진 것입니다.(→경제적인 논리를)

⑦내년까지 578%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0% 줄여야 한다면(→200%로)

⑧채외동포가 지금 550만이나 됩니다. 이 숫자로 볼 때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 수가 185개국인데 그 중에 90여 개국에 제가 알기로 500만 이만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90여 개국이)

⑨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에 있는 유일사상부터 다원적 민주주의 사상으로(→주체사상이란 유일사상으로부터)

⑩국립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와 사립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기관 간에 입원비용이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입원 기간과 비용이)

⑪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된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집약된 것으로)

⑫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월 개정 감사원법 시행과 각급 기관의 감사계획을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방안으로서, →시행으로)

⑬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거의 1000건 정도의 정비안을 확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0건을 한 번에 회의해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실제로 어떻게 심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한 번의 회의에서)

## 7. 숫자는 무조건 재확인하라

일반 어휘의 오류만큼은 아니라도 우리가 크게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숫자의 오류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든가 문맥상의 숫자 관계를 계산해 보면 그 오류가 바로 드러나는 것들조차 속기록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문>

- ①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한 건수가 20건 17.8%, 20%에 달하고 있습니다.(→20건 (19.8%)으로 20%에)
- ②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쓰고 있는 농약이 한 657톤 이렇게 되는데(→657 품목)
- ③O-157에 이어서 O-262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O-26이)
- ④주화·카드 검용 공중전화 60대는 4/4분기에 계획된 것으로서(→960대는)
- ⑤종자 보존체계를 개선해서 영구보존을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중기보존으로 이원화하도록 보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영구보존은 -14~-18℃에서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4℃에서 5~20년의 중기보존으로)
- ⑥인공어초를 금년에 7만 9000ha를 시행합니다.(→1만 3000ha)
- ⑦그다음에 인원 장비 검사소 확대 실적이 93년 대비 92년, 94년 대비 93년, 94년의 실적을 3개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92년 대비 93~94년, 이렇게 3개년 실적을 자료로)
- ⑧원래 7500평도 500 병상이었는데 1만 1000평이 되는 바람에 500 병상으로 병상의 규모를 키운 것이지요?(→원래 7500평이 1만 1000평이 된 거야. 그 7500평도 500 병상이었는데 병상의 크기를 키운 거지.)
- ⑨지금 1급이 129명인데 외교직이 844명이니까 한 1급 계급만 올라가면 다 1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티오를 가지고 있어요.(→한 일급 계급만)
- ⑩지난번 8월 30일에서 9월 4일 동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는데 사실 시행령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시행령을 5일 동안 입법예고하느라 국무회의를 9월 5일 개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특별재해대책법이 늦어졌습니다.(→8월 31일)

## 8. 부호문자를 정확히 표기하라

단위 표기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호문자들은 국제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자기 임의로 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내용을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회의록의 품위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부호문자들은 웬만한 국어사전에는 모두 등재되어 있다.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국어사전을 찾아 정확하게 표기해 줄 일이다.

### <예문>

①이번에 법인세율 인하하는 개정 내용에 보면 2단계로 되어 있는 세율을 소득금액 1억 원 기준해서 그 이하는 16%를 14%로 2% 인하하고,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28%를 2% 인하해서 26%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2%포인트, →2%포인트)

②예정가격의 결정은 재무관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0개를 작성해서 입찰 전에 공개하고(→±2%)

③하루에 80Kg 내지 100Kg의 우편물을 들고 평균 33Km를 배달해야 한다고 합니다.(→80kg 내지 100kg, →33km)

④실질적으로 8월 말 현재 금년도 물가역제선인 6%가 돌파됐습니다. 그런데 M2 기준으로 화폐 증가율은 15.1%입니다.(→M<sup>2</sup> 기준으로)

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암연구센터 플러스 병원 이퀄 센터이거든요.(→암연구소+병원=센터)

⑥그 연구시설을 한번 돌리면 즉 전자총을 쏘면 50만KW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가 동시 소비될 수 있는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50만kW까지)

⑦집중호우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기상예보는 주의보 수준에 머물렀고 300ml가 넘는 실제 강수량에 비해 예상 강수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50ml에 불과하였습니다.(→300mm, →150mm)

## 9. 생소한 용어는 끝까지 확인하라

속기 업무의 특성상 생소한 어휘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다. 고유명사나 전문용어가 특히 그렇다. 또 고사성어도 있다. 이럴 때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다

른 말로 대체하거나 아예 그 어휘가 나오는 전후의 문장을 빼 버리는 이들이 있다. 같은 속기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업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길 일이다.

<예문>

- ①우리나라는 피크타임이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이에 100시간 내지 160시간이 걸리고 일반적으로는 최첨단 부하시간이 10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최첨두 부하시간)
- ②설령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수확에는 다소의 減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농사는 풍년인 것 같습니다.(→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등숙비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농사는)
- ③우리는 품종 자체가 도복에 강한 쪽인데 일본은 줄기가 길고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파재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우리는 품종 자체가 短幹으로 도복에 강한 쪽인데)
- ④과학기술원이라든가 한국화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시제품을 주어서 검사를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규명하는 이런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試片)
- ⑤레일 훼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반의 상태라든가 곡선 여부라든가(→노반의)
- ⑥현장을 가 보고 또 열차도 타 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특히 호남선이나 영동선 같은 것이 꼭 되어야 하느냐(→틸팅열차도)
- ⑦여론에 민감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자체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권력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을 부르짖어야지(→정리해야 됩니다. 泣斬馬謖인가, 제갈공명이 앉아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 목을 베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 ⑧우리는 수산청이 산하기관인 수산진흥원과 기득권자인 기존어업 허가자들과 탁상공론으로 정한 수가 설정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기존 트롤어업)
- ⑨또 밀집방지와 환경개선 魚病 등에 대한 공동관리체계의 미흡으로 효과적인 공



동대치가 미흡하여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밀식 방지와)

⑩우리가 북태평양소하성위원회에 빨리 가입을 해야 되지요?(→북태평양 소하성어족위원회)

⑪그러한 한도를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ICRP에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線量限度를, →ICRP-60에서)

⑫영광원전을 감사할 당시 현대건설 하도급 수주내역을 요청한 바 있는데 현대건설에서 자료를 빨리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이내흔 현대건설 사장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이 그 자료를)

⑬최근에 저와 더불어서 같이 하는 정책토의에서는 이 암 연구소를 일본형이 아니라 미국형의 형태로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미국형의 National Cancer Institute 형태로)

⑭지금 우리 의료구호는 3차 사회안전망입니다.(→지금 우리 의료구호에 대해서 이것이 3차 사회안전망입니다.)

⑮그러나 생활보호 범위를 확대해서 연령을 불문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실직가구까지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책임입니다.(→한계계층입니다.)

⑯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이혼선고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아동복지기관이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에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또 보좌관제가 있어 가지고)

## 10. 오역 · 오타에 주의하라

오역이나 오타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속기사가 자신의 원고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아무리 속기술에 자신이 있더라도 반드시 녹음 대조하도록 하라. 그리고 녹음 대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원고를

직접 검토하도록 하라. 육안으로 검토하다 보면 녹음 들을 때는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오류를 얼마든지 또 발견하게 된다.

<예문>

- ①삼척군민 6000여 명이 권기대회를 열고 반대시위를 하였으며, 원전건설 반대 대책위 결성 등 강경 대응책이 확산되고 있어 입지활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궐기대회를, 입지 확보가)
- ②화력은 공해를 발생하게 되고 또 원자로 문제, 앞으로 갈수록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원자로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로)
- ③우리 양아버지법원장님이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梁 지법원장님이)
- ④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인 자는 종합과세가 되고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인 자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된다...(→4000만 원 이하인 자)
- ⑤아까 여러 선배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도에서 예산이 전부 행사하는데 인건비가 다 쓰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쭙어 봅니다.(→그런 각도에서 예산이 짓고 행사하고 그리고 인건비로 전부 다 쓴 것 같아서)
- ⑥파연 지구촌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어떤 것이 국익인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로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어떤 것이 국익이고 국제사회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냐,)
- ⑦아까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에도 여러 가지 기업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지역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겠다, 도정에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세일즈 정신을 강조하겠다...(→기업·경제와 관련된 경력에서 이 지역의 도정에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키겠다)
- ⑧우리나라는 농민들의 주택 소유 관념으로 보아서 집단적으로 집을 지어서 전부 다 같이 와서 살아라 하는 것은 잘 안 될 텐데 전시효과나 그렇지 않으면(→살아라 하면 잘 안 될 텐데 이게 전시효과냐, 그렇지 않으면)
- ⑨그동안 일해 온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노동행정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고, 이런 지역성 현안문제는 특별히 항만청이 매립권을 가지고 있고(→노동행정으로 얼마만한 영향을, →지역사회 현안문제)

⑩이런 노인네들이나 부녀자들이 과수원 또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그 고온다습한 그러한 풍토 속에서 하루만 견디어 내는 것이 아니라(→하우스 속에서)

⑪숫자가 높을수록 끈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알칼리 붕괴도의 경우도(→평가되는)

⑫현재까지 이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투자한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연구성과가)

⑬제작주문은 나와 있으나 때문에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태로(→‘제작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⑭새마을운동은 60년도 우리 농촌이 보리고개와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운동이었습니다.(→60년대 우리 농촌의 보릿고개와)

⑮연근해 어장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용존산소량(DO) 이것이 기준치가 넘는 곳이 서남해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용존산소량(DO) 이것이 기준치가)

⑯무리한 배정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했습니까.(→물량 배정의)

⑰국제금융시장은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경제 제 상 품의 개발, 또 시장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규제완화, →신금융상품)

⑱일반 대중화된 세탁기 같은 것은 10%를 15%를 해 놓고 고급모피하고 골프용품, 보석에 대해서는 특소세율을 낮추었습니다.(→올려놓고)

⑲올바른 사상이나 철학과 인적 구성이 안 되면 성립 못 합니다.(→올바른 사상이나 철학이 정리되고도 인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성공 못 합니다.)

⑳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 전문 행정직 내외의 사회복지 직렬로 전직시킬 용의가 있는지(→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행정직 내의)

## IV. 결 론

‘알아야 면장’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표준 국어 대사전). 그러면 속기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정확한 속기록을 작성해 낼 수 있는가. 타 직종과는 다른, 특별한 학식과 실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음성언어에 대한 고도의 청취능력을 말한다. 둘째는 속기를 알아야 한다. 언어 속도를 따라잡을 만한 운필능력이다. 셋째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국어 지식이야말로 수문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 중에서 운필능력은 음성인식기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차츰 그 중요성이 퇴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성인식기의 문자화 능력은 분당 600타 정도라고 한다. 분당 대략 240~250자 정도의 속도다. 속기를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루어 볼 때 10년 이내에는 충분히 현재의 속기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것은 우리 속기인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바람직한 일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음성언어를 순간순간 부호문자로 정착시키고 이를 다시 일반문자화하는 일이야말로 속기사들을 가장 지치게 하고 직업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음성인식기가 실용화되면 수필속기와 기계속기는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속기 업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할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음성인식기가 음성을 문자화할 수는 있어도 문자언어화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생각하는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

음성인식기가 실용화될 때 사람의 몫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선은 음성인식기가 문자화하지 못한, 또는 부정확하게 문자화한 ‘음성’을 ‘의미를 가진 언어’로 인지하여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음성인식기는 어디까지나 음성만을

인식하여 문자화할 뿐 청취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기의 지속적인 개량에 따라 그 정확도는 날로 높아져 가겠지만.

그러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겨주는 것은 끝끝내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음성언어의 의도를 정확히 문자언어로 살려 낼 수 있는 것은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음성인식기가 실용화되어 음성을 문자화하는 기능적인 영역은 기계화로 넘어간다 해도 속기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문의 영역만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 우리 속기인들은 이러한 음성인식기 시대에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수필속기든 기계속기든 현실적으로 음성을 일일이 문자화하는 것 자체가 속기사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대부분의 속기사들은 이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떨어 버리기 위해 문자화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었고, 속기록의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업무 태도는 오히려 장려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샌가 청취능력이나 수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것이 속기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아, 그것이 업무상에서도 속기인 상호간 대화 단절의 커다란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명색이 속기사라 하는 이들조차도 음성언어를 그대로 문자화하는 것이 속기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수문을 요구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속기는 말하는 대로 써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날 우리 속기록상의 모든 오류의 근본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속기술만 익혔지 속기록의 생명인 정확성을 챙길 만한 청취능력이나 수문능력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속기록상 수많은 오류를 남기면서도 막상 자신의 능력 부족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야말로 말하는 대로 정확히 써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속기사'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사람의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는 사람의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다. 아마도 이 말 속에 담긴 뜻을 속기사들만큼 실감할 수 있는 이들도 드물 것이다. 마치 속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 같기 때문이다.

속기는 ‘말한 대로’ 써 주는 것이 아니다. 설사 ‘바담뽕’이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속기사는 마땅히 ‘바람뽕’으로 새겨듣고 그렇게 기록해야 한다. ‘들리는 대로’ 써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설사 ‘바담뽕’으로 들리더라도 자신의 오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기록해야 한다. 속기사의 신조 1항에 “우리는 들은 대로 쓰고 보태거나 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속기사는 절대로 오청하지 않는다는 지적 오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설사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진 언어’로 받아 적었다 하더라도 그 전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가진 언어’가 그 문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허다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음성언어로 표현된 타인의 주장이나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문자언어로 재생해 내는 것은 고도의 지적 작업이라 할 것이다. 단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지적 작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평생을 걸고 언어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속기야말로 전문직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이란 무엇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속기사는 모름지기 언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음성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문자언어로 살려 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자연히 거기에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연구 자세로 업무에 임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속기사는 자연스럽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성과 그 차이를 체득하게 되고, 속기록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앞에 열거한 수많은 예문들을 통하여 어렵פות이나 짐작들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속기록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진정한 속기인들이라면 아마도 얼굴이 몇 번이나 화끈거렸을 것이다. 속기사의 존재 의의는 정확하고 품위 있는 속기록의 작성에서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위상을 닦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에 상응한 지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러한 위상의 극복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속기록은 현대의 사초다. 오늘날 역사가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가 만들어 내는 속기록도 먼 훗날 그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암만 생각해도 자신이 없다. 오히려 자꾸만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는 엄숙한 것이다. 속기인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겠다.

---

## **【참고문헌】**

1. 速記概觀(국회사무처, 1969)
2. 速記總覽(제1집)(대한속기협회, 1972)
3. 速記文化 창간호~제5호(舊대한속기협회, 1955~1959)
4. 高慮速記學報(창간호, 1955, 제3호, 1957)
5. 速記界 창간호~제38호(대한속기협회)
6.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8)
8. 표준국어문법론(남기심·고영근 지음, 탑 출판사, 1995)
9. 한글 맞춤법 강의(이희승·안병희 공저, 신구문화사, 1996)
10. 국어문화학교(국어반) 교재(국립국어연구원, 2000)
11. 신동아(동아일보사, 1997. 11월호)
12. 기타 각종 회의록

속기실무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업무효율화 방안

김 란 희





## 【목 차】

### 제1장 서 론 / 93

1. 연구의 목적 / 9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94

### 제2장 속기과 조직현황 / 95

#### 1. 인력현황 / 95

##### 가. 속기인력 / 95

- (1) 남·여 속기사 현황 / 95
- (2) 수필·기계 속기사 현황 / 96

##### 나. 편집인력 / 96

- (1) 편집인원현황 / 96
- (2) 향후 편집인력 편재방향 / 97

#### 2. 업무현황 / 98

##### 가. 속기실무현황 / 98

- (1) 속기조의 편성·배치 / 98
- (2) 회의록원고의 작성·검토 / 98

##### 나. 편집실무현황 / 99

- (1) 편집·교정 / 99
- (2) 인쇄·발간 / 99

### **제3장 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 / 101**

1. 고령화의 원인 / 101
  - 가. 조직외적 요인 / 101
  - 나. 조직내적 요인 / 102
2. 고령화의 문제점 / 104
  - 가. 업무의 부적합성 / 104
    - (1) 속기방법 / 104
    - (2) 지식 및 정보의 활용 / 105
  - 나. 업무환경의 변화 / 108
    - (1) 전산화도입의 배경 및 과정 / 108
    - (2) VDT증후군의 발생요인 증가 / 109
  - 다. 부정적 의식구조의 대두 / 111
    - (1) 업무에 대한 인식 / 111
    - (2) 업무에 대한 자긍심 / 114
    - (3) 현안 및 문제점 / 115

### **제4장 고령화로 인한 비효율화 해소방안 / 118**

1. 팀제도입 및 편집행정직의 속기직 대체 / 118
  - 가. 필요성의 대두 / 118
  - 나.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 120
2. 조직의 유연성 제고방안 / 122
  - 가. 계약직의 지속적 활용 / 122
  - 나. 전산직 고정배치의 필요성 / 124

- 3. 합리적 인사 및 보직관리 / 125
  - 가. 1위원회 1담당관제 도입 / 125
  - 나. 본회의회의록 담당관제 도입 / 126
  - 다. 4급이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 127
    - (1) 긍정적 측면 / 127
    - (2) 부정적 측면 / 128
  - 라. 국내외 연수기회의 확대 / 128
- 4. 능동적 자구노력 방안 / 131
  - 가. 입법지원 능력강화 / 131
    - (1) 회의록 서비스체제의 발전방안 / 131
    - (2) 소위원회 속기업무의 변화모색 / 133
  - 나. 전문화 강화방안 / 134
    - (1) 교육기회의 확대 / 134
    - (2) 사전심의 등 참여의 확대 / 135

## 제5장 결 론 / 136

## 참고문헌 / 13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회업무 중 가장 핵심인 회의록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는 의정반세기를 맞는 동안 국정논의의 중심에서 서서 명실상부한 의정활동의 생생한 기록들인 회의록을 생산해 내며 귀중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회의록 발간업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지원은 물론 정보화·민주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일반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도 정보화·개방화·민주화라는 급격한 변화로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변화는 곧 개방과 경쟁으로도 귀결지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직내부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아 공직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생애를 바쳐 일할 만한 보람있는 일로 여기며 노력한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때 비전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이다.

속기과로서는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업무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회의록발간업무의 전산화작업, 기계속기의 확대, 정보공개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기록과 회의록 등록 등 업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 조직의 현실은 정작 외부와의 개방과 경쟁없이 정체된 채 조직내에서만 경쟁으로 조직 전체가 고령화와 침체를 맞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보면 올해부터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는 국가적으로도 경제 사회변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으로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되는 사회나 조직은 그에 대비한 제도와 의식의 재정립과 스스로의 관리 및 자기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정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재점검, 재배치하는 것은 살아 있는 조직으로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속기과가 현재 놓여 있는 실무 및 인원의 실태를 살펴보고 조직의 고령화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본 후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의회도 그에 따른 신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속기실무직원들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춰 요구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발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고령화는 사기저하와 함께 조직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적 고찰이 아닌 실무적 측면의 조사와 검토로 속기과 조직현황을 파악하고 사회환경적인 변화와 맞물린 고령화의 원인을 조직외적 요인과 사무처의 조직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상 문제점과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통계와 직접적인 설문작업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비효율의 해결방안으로 조직과 인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며 합리적인 인사정책과 직원 스스로의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생동감 있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제2장 속기과 조직현황

논제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과의 조직을 살펴보면 속기1과에 편집담당 1계와 속기1담당부터 속기4담당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속기2과에는 속기1담당(편집담당포함)부터 속기4담당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1. 인력현황

#### 가. 속기인력

##### (1) 남·여 속기사 현황

현재 속기과에는 73명의 인원이 속기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남성 속기사는 8명이며 나머지 65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여성속기사의 증가는 1970년대 들어와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업무의 특성상 섬세한 감각을 요하는 점, 비활동적인 면, 기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여성속기사의 수는 전체 3분의 1정도를 차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면은 현 남성속기사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어떤 비하현상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기도 하다.

2002년도 7월 현재 6급이하 속기실무인원의 남녀별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1

<남녀별속기사현황>

남자	여자	계
8명	65명	73명
10.96%	89.04%	100%



## (2) 수필·기계속기사 현황

현재 국회에는 수필속기사 52명과 기계속기사는 21명으로 총 73명의 인원이 속기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1개 위원회 당 평균 4.3명의 속기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 외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문회, 각종 특위 등의 회의속기는 전체 인원을 풀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여러 차례 국회법개정은 연중 상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위원회 증설, 상설소위원회 설치 및 기록의무화 등 어느 때보다도 업무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 또한 민주화·정보화·개방화로 치달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공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1995년6월 개발된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회의록발간업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기계속기 인력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1995년 기계속기사 채용을 시작으로 2002년 7월 현재 수필·기계속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 <수필·기계속기사 현황>

수필속기사	기계속기사	계
52명	21명	73명
71.2%	28.8%	100%

## 나. 편집인력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종 특위, 보고사항, 목차색인, 제본 등 업무와 17개 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편집·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편집인원현황

현재 행정직 8명과 병렬직 14명, 총 22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병

렬직 현황을 살펴보면 속기직 총원은 13명, 행정직 총원은 1명이며 순수 행정직은 8명이다.

향후 편집직원의 총원방향은 전원 속기직으로의 총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후술한 속기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병렬직 중 속기직 총원은 속기실무 중에서 연공서열 위주로 이동되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운영은 지양되어야 할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2002년 6월 현재 편집인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 편집인원 현황 >

병렬직		행정직	합계
속기직	행정직	8명	22명
13명	1명		

(2) 향후 편집인력 편제방향

앞에서 살펴 본 인력현황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행정직렬에 속하는 편집직원의 경우 처음 입사한 신입직원에서부터 정년을 앞둔 직원, 그 외 질병 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한 인력배치는 속기과가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전산화, 팀제 등 업무배분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둘째,** 현재 속기직렬 또는 행정직렬로의 복합운영은 속기-편집업무의 연계성 부족으로 회의록 신속발간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행정직렬 편집직원의 2~3년 근무 후 타부서 전보는 업무의 지속성 결여, 현재의 회의록발간체제 하에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산능력 배양 필요성의 인식결여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속기직렬의 경우 속기실무 직원 중에서 연공서열 순으로 전보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으나 정보화·민주화되고 있는 사회환경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

고 있는 회의록발간업무를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발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편재방향은 국회회의록시스템 실시로 더욱 변화 발전될 회의록 발간 작업에 대비하여 속기-편집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직 또는 병렬직 정원 전원의 속기직렬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고참 순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직원들로 연령과 관계없이 인재 양성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기용하여야 할 것이다.

## 2. 업무현황

### 가. 속기실무현황

#### (1) 속기조의 편성·배치

회의록 작성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현재 속기업무의 운영실태는 국회회의록 작성등에관한내규(2장4조,5조)에 의하면 주무와 부무 2인 1조로 편성하여 기록케 하고 부득이한 경우 1인 1조로 편성·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한정된 속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계속기사의 3인 1조 운영과 신규직원을 포함한 2인 1조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인 1조이며 국정감사 시에도 1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편성된 속기직원은 담당사무관의 속기조 배치에 따라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 청문회, 공청회 등 익일발간 회의록의 경우 1인 5분, 상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의 경우 1인 10분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는 1개 위원회당 3~6인으로 팀을 구성, 팀장을 중심으로 10분 ~ 30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회의록 원고의 작성·검토

각 속기조는 위원회는 주무의 책임아래, 국정감사는 팀장의 책임아래 수필 또는

기계로 각각 속기한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PC번문의 방법으로 작성하는데 전자회의록 등록·검색을 위한 태그도 함께 입력하여 최종 보정된 원고를 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한다.

업무가 중복될 때 업무원고작성 순서는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발간 회의록 원고를 우선적으로 작성하며 그 다음 위원회 원고를 작성한다. 위원회의 경우 회의 차수 순으로, 국정감사는 기관별 일자 순으로 하되 종합감사, 중앙감사, 지방감사 순으로 작성한다.

담당사무관은 원고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차수별로, 국정감사는 기관별로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교열하며 검토 때 발견된 오류는 직접 전산입력 방법으로 보정한 후 파일결합하여 원고와 함께 편집직원에게 인계하고 전자임시회의록으로 등록한다.

## 나. 편집실무현황

### (1) 편집·교정

편집직원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인수받은 회의록원고를 국회법 제69조와 제115조의 회의록 기재사항 등을 취합한 후 회의록체제에 맞도록 편집하여 완성하고 부록으로 발간할 사항과 원본으로 보존할 사항을 구분, 신속발간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결합파일을 송부하고 회의록원고는 인편을 통해서 인쇄소로 송부한다. 이때 원고와 함께 받은 디스켓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 인쇄소에서의 재입력과정이 생략되므로 초·재교과정에서 소요시간은 크게 단축되었다.

인쇄소는 초교지를 인쇄하여 편집직원에게 인편으로 송부하며 편집직원은 초교지에 다시 교정하여 인쇄소로 송부하는 절차로 재교 내지 3교 과정을 반복하여 교정작업을 마무리한다.

### (2) 인쇄·발간

인쇄소에서는 위 과정을 통해 완성된 원고를 인쇄하여 속기과에 납품하면 배부선에 따라 배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부록으로 발간하는 서면질의·답변의 경우 행정부로부터 제출되는 서면답변서의 디스켓 제출은 거의 정착된 상태이나 의원 측으로부터 제출되는 서면질의서의 경우는 디스켓 제출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서면답변서 제출의 경우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할 답변관계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함으로써 부록발간에 있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바 위원회 행정실에서는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4항을 숙지하여 대행정부 상대 시 주지시켜 줌으로써 회의록발간의 신속과 예산절감, 일목요연한 서면질의·답변서 발간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제3장 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

### 1. 고령화의 원인

#### 가. 조직외적 요인 (사회환경적 측면)

우리 나라는 제헌국회 이전에 이미 의회속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6년 12월 11일 미군정의 입법자문기관인 南朝鮮過渡立法議院 제1차 회의 때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이 당시 속기사 정원은 10명이었으나 실무 가능한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속기수 강생까지 채용하였으며 속기업무의 양은 계속 증대되어 업무 양 대 비 속기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응시만 하면 거의 채용되는 형편이었다.

그 후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의 개원을 보게 되어 현재와 같은 조직의 시발이 되었다. 제헌국회를 거치는 동안 속기계는 견실하게 성장했으나 6.25와 함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1953년 서울 수복부터 속기업무가 재개되어 1960년에는 처음보다 10배가 넘는 증원을 가져와 명실상부한 의정사의 기록자로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의정사의 한 가운데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입지는 많이 강화되었으나 이 당시에조차 속기사의 영역은 거의 국회에 한정되었으며 남성 전유물이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어 1970년대부터 여성속기사의 진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속기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뚜렷해지는 경향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와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 속기업무 자체가 섬세한 감각을 요하며 비활동적인 점, 고도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한 남성들의 지원을 저조 등은 속기사가 여성의 적성에 더욱 알맞은 직업으로 자리 잡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에도 영향이 있었으나 한편 그동안 가져왔던 궁지와 산 역사의 기록자라는 자부심보다는 승진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출 등, 탈출구 없이 정체되어 있는 선배들의 입장이 의욕을 잃게 하여 후진양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의 진출이 현저해진 점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궁여지책으로 조직의 신진대사 면에서 활력을 준다는 명분아래 결혼 후 그 직을 사임하겠다는 각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분위기는 여권신장운동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그 법적 효력 또한 애초부터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서 각서제도는 일단 폐지되었다.

이후 속기수강생 모집에서부터 남성 비율은 축소경향을 띄면서 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계속되고 또한 최근의 민주화·개방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안정된 가정생활로 더욱 적극적·발전적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장기근속 직원의 수는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 나. 조직내적요인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 외에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조직 내 인사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헌국회부터 5대국회까지의 속기사직렬은 초임자로부터 계장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속기사였고 제6대 민정이양으로 속기사를 새로이 채용하면서 행정직으로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속기직렬이 신설되어 속기서기, 속기주사, 속기사무관, 속기서기관으로 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가서 속기사들의 인사적체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시 행정직으로 환원되어 행정직으로 발령이 났으나 1981년도 이후부터는 다시 속기직으로 환원되어 직원들의 전직이나 전출이 막히게 되었다.

직렬의 변화 속에서 1970년대 초에는 신규 속기사로 젊은 사람들이 채용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군에 입대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한부공무원제도를 두었다. 이 제도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 이 제도로 인해 6~7명의 기한부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정식채용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3乙직급의 법제관직(현 5급)을 신설하여 사무처내의 전체 사무관을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였던바, 속기과에서 4명의 사무관이 합격하여 법제사법·내무·보건사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제관으로 전보하였다. 이로써 속기과에는 다소나마 인사적체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1982년 연속 사무관 승진시험이 공승으로 실시되어 그 때 합격된 속기선배분들은 사무처 내 타 행정부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속기과로서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계속 실시되지 않아 외부로의 진출기회를 막는 결과가 되었다. 그 후 약 15년만인 1997년에 공승이 실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직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 외에도 행정직으로 발령받았던 몇 분의 선배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행정부와 공기업으로의 전직을 실현시켜 속기과를 떠나게 되어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직 내 인사정책의 변화 속에서 속기사들의 법원진출 요청은 속기과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법원에서는 1976년 공판조서의 정확성제고와 재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속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5개년 속기사 충원계획에 따라 주사급 속기사 정원을 37명으로 정하고 1차로 국회사무처에 진출 요청을 해 옴에 따라 1976년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속기사 10명이 법원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속기 직렬로 묶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전직시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연차적 충원계획은 실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후에 단계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속기사들의 외부진출 입지는 한층 넓어졌을 뿐 아니라 속기계 또한 폭넓게 발전했을 것이다. 최근 법



원속기사들의 채용은 그 수요처를 주로 학원생들에서 찾고 있는 실정으로 속기과에서의 진출은 그 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인사적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4 국회사무처 속기과의 신규직원 채용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속기사양성소가 1968년 2월 3일 설립된 후 1기 졸업생과 속기학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이 1969년도부터 1979년까지 꾸준히 실시됨으로써 예측가능한 수요로 인해 속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80년도에 실시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길게는 4년 동안 없었던 해도 있어 조직침체는 물론 속기계 활성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제헌 이래 이와 같은 국회사무처 인사정책은 속기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무직원들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며 사기저하 및 조직침체를 우려케 하고 있다.

## 2. 고령화의 문제점

### 가. 업무의 부적합성

#### (1) 속기방법

현재 회의록 발간을 위한 속기방법은 정통의 방식인 수필속기 즉, 특정한 부호 문자를 이용하여 필기구로 언어속도와 일치되게 손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특별한 기계장치나 장비의 도움없이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서 간편하게 속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체의 한 부분인 손이 가장 주요 기구로 사용되기에 피로도가 높아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며 기록해야 하는 속기업무의 특성상 계속 기록하기 어려워 10분내지 20분 간격으로 교대하여 기록해야 하는 단점과 함께 손가락 손목 어깨 등 육체적인 장애현상도 많이 일으키고 있다.

현재는 기계속기도 사용되고 있는데 수필속기보다 피로도가 낮아 장시간 기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계속기사의 채용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1994년까지 입사한 직원들은 수필속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고참 속기사들로서 그 평균연령은 약 38.85세로 피로도의 누적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6년 속기방법의 변화를 위해 재직자들에게 컴퓨터속기방법의 재교육 실시를 시도하였다. 재교육 실시의 제일 큰 목적은 회의록의 신속발간을 위한 번문시간의 단축과 수필속기로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방법보다 피로도가 현저히 덜하다는 면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교육 실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속기실무를 위한 기준속도인 1분당 320자 이상 입력이 가능하게 교육 훈련되려면 신규채용이 목적인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1년~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가능한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대상직원들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평균연령이 약 39세로서 고속입력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에는 연령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만족스러운 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안정된 직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규채용을 원하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에 임하는 열의가 부족하며, 기존의 회의록 발간업무 종사로 인해 교육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으며, 훈련이란 중단없이 매일 계속되어야 하나 정기회·임시회 등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1996년도 자체 재교육실시 효과는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속기방법 자체의 변경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현재 번문 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지식·경험 및 정보의 활용

현재 속기과 실무인원의 평균연령 및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4,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있어서 35세 이상이 약 55%인 4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연수는 63%인 46명이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실무 고참속기사들의 경력분포는

짧게는 1년에서부터 24년까지로 약 20년 이상의 간격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표-4>

<연령별 현황>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계
4명	11명	13명	25명	14명	1명	0	73명
5.48%	15.07%	17.80%	34.25%	19.18%	1.37%	0	100%

<표-5>

<근속년수별 현황>

1년~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이상	계
19명	8명	25명	15명	6명	0	73명
26.03%	10.96%	34.25%	20.55%	8.21%	0	100%

그러나 이들 고참속기사들의 경력에 따른 업무의 차별화는 주무와 부무라는 이분화에 의한 단순구분 외에 주무에게는 부무의 원고를 검토하는 책무만 추가될 뿐 모두에게 속기업무를 획일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직무수행 유도 및 능력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경력의 평가절하현상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속기실무는 고도의 정신적 집중력과 신체적 순발력이 요구되는바, 40세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현장 속기실무에 점차 애로를 겪게 되어 업무의 능률성 향상에 도 저해를 가져오는 바 크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널리 인정받고 싶어 하며 광범하게 활용되어지는 기회를 가질 때 개인적인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사기진자의 계기가 되어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자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업무의 균분화 외에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할 기회가 없을 때는 장기근무로 인한 보람과 긍지를 뒤로 한 채 침체만이 가중될 뿐이다.

아래 표-7은 속기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일반적 특징이다.

표-7

<속기과 일반적 특징>

항목	선택지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성	8	11
	여성	64	89
학력	고졸	11	15
	전문대졸	4	6
	대졸 이상	57	79
직급	9급	15	21
	8급	0	0
	7급	9	10
	6급	47	65
	5급 이상	1	1
현직급 근무기간	5년 미만	34	47
	5년~10년	18	25
	11년~15년	15	21
	16년 이상	5	7

속기과의 일반적 특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0%에 달하는 인원이 여성이며 학력분포는 대졸 이상이 57명, 79%로 고학력집단이다. 또한 직급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5%가 6급으로, 특히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입사한 9급 신규채용자 15명을 제외하면 전체 82%가 6급에 몰려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속기과 현안 문제점 중 제일 큰 문제로 승진적체를 꼽는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 나. 업무환경의 변화

### (1) 전산화 도입의 배경 및 과정

1988년도 국정감사 부활 등으로 업무의 증가는 불가피하였으나 당시의 속기기술과 체계로는 감당키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인력에 의존해 오던 속기업무의 기계화·전산화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국회회의록 작성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속기전산시스템개발 사전조사 연구는 1991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속기방법 자체가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작성에도 애로가 많아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속기업무의 기계화나 전산화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후 민주화·정보화 그리고 개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현대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의 입법정보 서비스확대를 위해 의정활동 기록인 국회회의록의 신속한 발간과 공개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의록 원고작성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한 회의록을 발간하고 전자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입법과정에 대한 투명성확보로 국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서 사무처에서는 1995년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국회회의록 작성과정의 전산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동안 회의록 발간과정은 속기사들이 회의장에서 수필속기 후 수필로 번문하여 제출한 원고를 담당사무관이 취합·검토하고, 편집직원은 체제에 맞게 편집하여 인쇄소로 송부한 후 재입력과 교정을 거쳐 담당사무관이 최종 검토한 후 교료를 함으로써 완료되었으나 회의록발간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작성에서부터 편집에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속기 실무자의 작업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번문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수필속기 후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원고지에 손으로 옮겨 적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속기과에 386급 PC가 2인 1대씩 도입되면서 수필번문과 PC번문의 혼합된 형태를 띠다가 1994년 후반부터 486급 PC를 추가, 1인 1대씩 갖추어 수필

-PC변문한 원고를 출력 후 제출하는 반수동 형태로 바뀌었다.

1995년도부터 시작된 기계속기사 채용은 속기과정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 수필속기방식 일변도에서 점차 수필속기-PC변문이나 컴퓨터속기-PC변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속기 및 원고작성과정의 전산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켜 회의록의 신속·정확한 발간을 실현시키게 되었다.

## (2) VDT증후군 발생요인의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부터 본격화된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의 개발로 속기과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공하기 위해 기계속기사의 채용확대, 변문의 전산화, 입법정보서비스확대를 위한 회의록 등록업무 실시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 같은 업무전산화로 컴퓨터의 사용이 속기 및 변문작업에 보편화됨에 따라 작업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산업보건학적 문제인 영상표시단말기(VDT)증후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많은 연구결과가 영향에 대해 밝히고는 있으나 완전히 정리 되지 않은 실정임은 사실이나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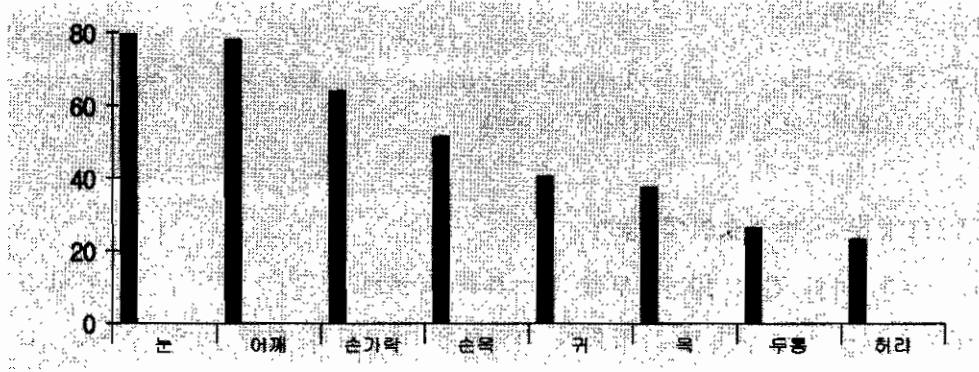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최근 컴퓨터가 사무기기로 널리 보급되면서 경직된 자세로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형태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 정부에서는 93년부터 VDT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보도를 보면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른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예방의무를 구체화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해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속기과업무는 그 특성인 반복성, 동일한 자세의 지속, 높은 업무집중도 및 근무긴장도 등은 VDT증후군의 우려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모든 일은 인간적 측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지나친 효율화만을 추구한 인간

성의 등한시는 기계화된 경직된 업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목표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속기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VDT증후군관련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총 참가인원은 여성 57명, 남성 7명으로 64명이며 응답자 평균연령은 37.6세로서 각 부위별 증상은 눈 51명(79.7%), 어깨 50명(78.1%), 손가락 41명(64.1%), 손목 33명(51.6%), 귀 26명(40.6%), 목 24명(37.5%), 두통 17명 (26.6%), 허리 15명 (23.4%), 기타 피로증상, 피부장애, 팔꿈치 등에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그 외 아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여직원의 경우 1993년도부터 조사된 자연유·사산 경험은 시사하는 바 크다.

표-7

<여직원 유·사산 경험자 현황 >

1993 - 2002. 7월 현재

	속 기 1 과	속 기 2 과
1계	3인 4회	1인 2회
2계	1인 1회	2인 2회
3계	2인 3회	4인 6회
4계	5인 7회	2인 2회
합계	11인 15회	9인 12회

참고로 1995년 본격적인 속기업무의 전산화가 실시된 이래 기계속기사의 채용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1995년 이전에 입사한 51명의 속기실무직원들의 연령은 35세부터 45세 사이이며 그 평균연령은 38.85세로서 VDT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다. 부정적 의식구조의 대두

현재 속기과 업무는 처음 입사해서 승진되기까지 타부서로의 전출없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차별화된 업무란 근무연수에 따른 주무와 부무로의 단순구분과 편집파트로 옮겨 가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근무경력에 따른 경험과 능력에 맞는 업무수행은 조직체계상 별 다른 방법없이 퇴직때까지 동일 조직 내에서 동일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다. 승진 시에도 타 부서로의 전출없이 속기과 내에서만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진이 된다 해도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논문작성을 위한 설문작업을 통해 최근 속기과 직원들의 의식과 현안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업무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현재 속기과 조직의 침체와 사기저하의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바, 내·외부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업무에 대한 인식

먼저 속기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설문해 본 결과이다.



<속기업무에 대한 인식>

항목	선택지	응답 수(명)	비율(%)
업무의 종류	단순 기능직	2	3
	일반 사무직	5	7
	전문직	63	89
	비서업무	1	1
	기타	1	1
업무의 양	적다	2	3
	적당하다	2	3
	많다	4	6
	양은 적당하나 일이 몰려 있다	62	86
	양은 적으나 일이 몰려 있다	2	3
전문성의 정도	누구나 즉시 할 수 있다	0	0
	단기간 훈련으로 할 수 있다	10	14
	장기간 훈련과 전문성을 요한다	61	85
	기타	1	1
업무와 보수 수준	업무에 비해 보수가 많다	2	3
	적당한 수준	27	38
	업무에 비해 보수가 적다	40	56
	기타	1	1

업무의 종류에 대해 “어떤 종류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89%인 63명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하여 업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일반사무직, 단순기능직, 비서업무, 기타 등이 있었으나 단순기능직이라고 응답한 이면에는 현재 사무처 내 속기과 위상과 관련한 다분히 자조적인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과 연관해서 업무의 ‘전문성 정도’를 묻은

질문에 85%인 61명의 응답자가 '장기간의 훈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응답했고 10명이 '단기간 훈련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응답을 했다. 두 번째 문항인 '단기간 훈련'의 응답자에 대해 개별 심층면접을 한 결과 이는 국회사무처 속기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즉 속기 1급 상당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이며 85%의 응답자는 속기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체로 3년 정도의 실무 적응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의회속기사로서 자기 몫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업무의 양에 있어서는 86%인 62명이 '양은 적당하나 일이 몰려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1년 업무량의 평균치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일이 몰려 있고 또한 업무의 특성인 적시성·시급성 등과 맞물려 체감하는 업무량은 많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에 대한 과부하현상은 의회 특성상 부득이한 일로서 지속적인 작업환경의 개선과 수당의 신설, 체력관리실의 설치 등 과부하 완화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보수 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적다'가 56%, '적당한 수준의 보수이다'가 38%, 그 외 기타 의견들이 있었다. 여기서 '업무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보수를 염두에 둔 답변일 수도 있으나 대개는 업무와 관련하여 경위직의 경우 '공안직 공무원 수당'이 있는 만큼 속기직의 경우도 '기술수당'이 마련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단순기능이 아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인 사초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2)업무에 대한 자긍심

표-9

<업무에 대한 자긍심>

항 목	선 택 지	응답 수(명)	비율(%)
외부의 평가	기능직	53	74
	일반행정직	2	3
	전문직	9	13
	기타	8	11
자긍심	자랑스럽다	6	8
	보통이다	24	33
	자랑스럽지 못하다	4	6
	입사 때는 자랑스러웠으나 현재는 아니다	25	35
사무처 내의 위상	소외받고 있다	68	14
	타 과와 대등하다	0	0
	주도적 위치에 있다	0	0
	모르겠다	2	3
전직 의향	전직하고 싶다	43	60
	속기과에 남고 싶다	19	26
	아무래도 상관없다	6	8
	기타	4	6

먼저 속기사 스스로가 느끼는 자긍심 정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기과 직원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5%인 25명이 ‘입사 때는 자랑스러웠으나 현재는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33%인 24명이 ‘보통이다’, 6%인 4명이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8%인 6명만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속기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인 53명이 ‘기능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앞의 질문에서 89%인 63명이 스스로의 업무를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과 크게 차이가 있다. 즉 스스로는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외부에서는 기능직 업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괴감을 느끼는 직원이 많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무처 내 속기과 위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4%에 달하는 68명이 '소외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명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소외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사기저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타 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면 전직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60%의 응답자가 '전직하고 싶다', 26%는 '속기과에 남고 싶다', 8%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기타가 6%로 조사되었다.

'전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속기과가 승진 등에 불리한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기타 '현재 업무가 힘들어서' 혹은 '속기과 직원들도 얼마든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속기과에 남고 싶다'고 응답한 직원의 수가 약 30%에 불과한 실정은 속기과 조직이 그 동안 내외부적으로 겪어왔던 앞날에 밝지 못한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 딛었을 때의 감격과 결심이 업무수행과정에 꾸준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부로부터 올바른 평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설문결과 현 속기과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침체와 사기저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 (3) 현안 및 문제점

마지막으로 속기과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결과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다.

표-10

## &lt; 현안 및 문제점 &gt;

항 목	선 택 지	응답 수(명)	비율(%)
타 과에 비해 불리한 점 (복수선택)	승진 및 순환보직	54	75
	사무처 내에서의 위상	53	74
	업무시간과 업무량	25	35
	해외연수기회 등 복리후생	49	68
행정직 대비 승진 소요기간	많이 소요	68	94
	타 과와 비슷	1	1
	적게 소요	0	0
	모르겠다	2	3
애로점	승진기회	44	61
	업무량	10	14
	동료직원과의 관계	9	13
	타 과 직원과의 관계	8	11
	기타	4	6
당면 현안 (복수선택)	승진적체	54	75
	노령화	51	71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	37	51
	정체성 상실	37	51
	기타	3	4

“타 과에 비해 속기과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96%인 69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승진 및 순환보직’(75% 54명), 둘째 ‘사무처 내에서의 위상’(74% 53명), 셋째 ‘해외 연수기회 등 복리후생’(68% 49명), 넷째 ‘업무시간과 업무량’(35% 25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행정직 대비 승진 소요기간에 있어서는 속기과의 승진기간이 행정직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고 한 응답자는 68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또한 속기과 근무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61%인 44명이 응답한 '승진기회의 문제'가 가장 컸고 14%인 10명이 '업무량의 문제'를 들었으며 그외 '동료직원들과의 관계' '타 과 직원들과의 관계' 기타로는 '근무연수(나이)와 업무의 관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승진기회의 문제는 속기직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사무처 인사정책 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행정직군 내에서 속기직렬의 분리 독립으로 인한 행정주사 또는 속기주사의 속기사무관 승진기회가 일반 행정직렬 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근무의욕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데 있다.

속기과의 당면 현안을 묻는 복수 선택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5%인 54명이 역시 '승진적체'를 들었으며 71%인 51명이 '노령화'를, 51%인 37명이 각각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와 '정체성 상실'을 선택했다. 기타 의견으로 '매너리즘' 등이 있었다.

이 인사적체의 사실은 88년에 1명, 3년이 지난 1991년에 1명, 94년에 2명(김선옥, 이주성), 95년1명 (김창진), 96년 1명(이경식), 97년 1명(손재옥), 그후 3년이 지난 2000년에 3명(최예숙, 권영찬, 김란희), 2002년 2명(최성주, 조영기)의 속기사무관 승진이라는 현황을 보더라도 속기직 공무원의 인사는 그만큼 적체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래 표-11는 최근 3년간 행정직사무관과 속기직사무관의 승진인원과 소요기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1

<승진시험대상자 현황>

연도	6급 현원		6급 만4년 이상		승진인원		승진소요기간	
	속기직	행정직	속기직	행정직	속기직	행정직	속기직	행정직
2000	56명		46명		3명	10명	20년	10년
2001	57명		48명		0	8명		11년
2002	57명	101명	48명	52명	2명	7명	20년	7년

※ 승진소요기간은 6급임용후 근무연수를 산정한 것임.

## 제4장 고령화로 인한 비효율화 해소방안

### 1. 팀제도입 및 편집행정직의 속기직 대체

#### 가. 필요성의 대두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소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1위원회 1담당관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팀제도입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편집직원의 속기직화는 상호연결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회의록의 신속·정확한 발간이 속기과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대로의 속기-편집 조직운영은 과제해결의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팀제의 운영과 편집직원의 속기직 대체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 동안 속기-편집의 이원화 현상은 신속·정확한 회의록발간에 지장을 주어 온 것이 사실로서 이 제도의 운영방법은 팀장과 팀원을 합해 1팀을 5인정도로 구성하고 팀장 책임하에 속기·번문한 회의록원고를 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한 후 현재 별도의 편집담당직원이 수행하던 회의록원고의 편집·교열작업도 함께 담당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팀제도입 및 편집직원의 속기직화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속기·편집업무의 연계성저해의 해소를 위해서이다.

업무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록발간은 속기직원의 속기·번문작업과 편집직원의 편집·교정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재의 상황은 속기실무직원이 회의록원고 작성으로 업무가 폭주할 때 편집직원은 업무공백을 맞고 있다가 원고가 나오는 시점부터 업무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등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집중과 공백의 사이클이 계속됨으로써 속기업무와 편집업무가 이원화되어 별개의 업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작성시점부터 편집 및 교정, 납품까지의 두 과정

을 연계시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계성 저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속기실무가 비교적 어려운 장기근속 속기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전문성을 회의록 작성 및 편집 등에 활용할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이다.

그 동안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고참속기사들이 차별화 되지 못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어 조직침체 및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실무경험으로 발언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교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기근속 속기실무직원들로 하여금 팀장으로서 원고검토 및 편집업무를 총괄케 하고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원고작성 및 편집업무를 담당케 하는 업무에 대한 차별화는 장기근속 속기직원들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행정직 편집직원의 전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회의록전산화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이다.

현재 편집행정직의 경우는 2~3년 후 타 부서로 진출되기 때문에 회의록발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따라서 전산화 마인드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회의록전산화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근속 속기실무직원들은 그동안 실무경험을 통해 전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팀제도입에 따른 편집업무의 병행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회의록 편집업무의 전문성과 고유성은 행정직 편집직원에게는 업무상 한계를 낳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자에 속기과 내에서는 회의록원고작성에 있어서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는 작성과 관행사이의 문제와 신속한 회의록발간과 정확한 회의록발간 사이의 겹을 줄이기 위한 발전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의는 회의록발간에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오랜 세월 전문가적인 인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대로 행정직의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 후 타 부서로 진출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고유성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회의록발간이라는 업



무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 회의록 발간업무는 실무와 편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더욱 신속·정확한 e-회의록의 발간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오랜 실무경험으로 쌓여진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발언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교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담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 나.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속기·편집업무의 연계성부족으로 초래되었던 신속한 회의록발간에 지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속기-편집의 연계성 부족은 실무직원과 편집직원 간의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하였는바 이러한 요인의 제거와 함께 시간차로 인한 업무공백을 가져오지 않게 됨으로써 회의록의 신속발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담당사무관의 원고검토시간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발간지연과 회의록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본다. 그 동안 담당사무관은 각 속기조로부터 제출된 원고를 취합·검토 후 보정작업을 거쳐 결합하여 파일과 원고를 담당편집직원에게 넘기고 편집된 교정지를 다시 검토한 후 최종교료를 거쳐 발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담당사무관의 업무과중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회의록 신속발간의 또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은 속기실무와 편집이 연계·통합 운영됨으로써 발간지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근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 조직의 침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전문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동안 일관된 업무수행은 차별화를 가져오지 못해 근무의욕 고취를 저해하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은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여 개인을 물론 조직에도 기여하는 바 크다.

그 외 속기직렬로 국한된 조직체계로 인해 승진기회 및 전직·전보기회가 전무한 현실에서 인사적체로 인한 갈등의 해소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회의록전산화율 제고 및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산능력의 구비는 회의록 전산화작업의 기본이다. 그러나 편집행정직의 경우 회의록발간업무에 대해 원천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2~3년 후 타 부서로 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속기-PC번문작업과 e-회의록 발간작업은 속기과 직원들의 전산화 마인드를 확고히 자리잡게 하였다.

따라서 속기-편집의 통합·연계는 회의록전산화율을 제고시켜 신속한 발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살아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속기 및 회의록작성 업무중심의 독립부서화 작업의 기초가 된다.

속기사는 적어도 회의록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작성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이 기본자세일 것이다. 속기과의 업무특성상 속기업무 담당부서에서 장기근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만큼 회의록관련 업무를 전반적·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회의록을 발간의 기초가 되는 기록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기록업무의 독립성유지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효율적인 인원 및 조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직원들의 사기양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최근 정보화와 전문화는 의회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의원님들이 본 회의에서의 질의내용이 방대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회의록발간은 실제 회의한 내용만을 담아서 발간하는 본호와 서면질의·답변, 구두질의·서면답변을 발간하는 부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록의 양이 본

호보다 많게는 서너배 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속기-편집이 연계·통합되어 일원화 될 때 실무속기직원들도 부록발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각 부처업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회의록원고 작성 시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조직의 유연성 제고방안

### 가. 계약직의 지속적 활용

국회법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수립은 연중 상시국회운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위원회 안전심사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기거나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감독권 강화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었으며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회법 개정효과는 회의록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 업무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속기과로서는 인력의 증원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인력의 증원결정은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님으로 속기과에서는 현원을 이용한 효과적인 조직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내부 사정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속기사 진출의 증가세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시험응시 때부터 남성의 응시율은 극히 저조하며 실력 또한 미치지 못함에 따라 채용인원 전원이 여성속기사로 채워지고 지고 있는 실정으로 남성고용 할당제의 도입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분위기조성 등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현재 속기과 여성속기사의 비율은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여성들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로 인식되지 않고 안정적인 인생 사이클로 가는 한 과정으로서 더욱 보호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부터 출산휴가를 90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직원이 조직구성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속기과는 직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융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기회, 국정감사, 임시회 등 연간 상시국회인 점을 감안할 때 회의업무의 특성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즉시성을 지님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잔여인력만으로 업무를 배분 운영함으로써 업무 과부하문제의 우려도 낳고 있다.

출산휴가 비율은 해마다 약 3%~5%로 3명 정도의 일시적인 결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속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처 전체 여직원들의 문제로서 여직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사무처 차원의 정책적인 해결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속기과 현안문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는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동반하게 되는 속기과 업무의 특성상 여러 문제점의 발생을 예견케 하는바 인력운용에 있어서 신축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한다.

속기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서만이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 시 미리 여유인력을 채용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후 정식채용하는 방법은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바 크다. 실제로 지난 해 9명의 신규직원 채용자 중 발령받은 6명을 제외한 3명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2002년 7월 22일자로 정식발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인력운용의 변경문제는 사무처 직제상 전체적인 조정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들의 긍정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 나. 전산직 고정배치의 필요성

현재 운용되고 있는 회의록시스템이란 책자회의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인 속기·원고작성·회의록발간 및 배부 과정에 전자회의록을 회의록 서버에 등록·관리하는 과정을 포함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록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효과는 민주화·개방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는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제고와 회의록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책자회의록 발간을 통해 회의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전자임시회의록은 하루에서 1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인터넷 공개가 가능하게 되므로 의원 의정활동의 신속한 보좌가 가능하며 3일간의 전자임시회의록 공개는 오·탈자 및 중대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정 요구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회의록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대수별·회기별 회의 총 차수와 회의 실시간 등 각종 통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목차검색, 항목검색, 색인어검색 등 다양한 회의록 검색방법을 제공하며 모든 회의록이 전자 문서화되어 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회의록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현재 속기 업무방식의 변화는 원고작성 시 DB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태그를 삽입하는 등 지침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담당 계 별로 관리자 1인(담당사무관), 실무자 1인을 지정하여 회의록 등록·관리업무 및 교육을 통해 원고작성과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에러가 발생되고 있어 이 경우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시급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회의록발간 업무 특성상 업무 폭주 시에는 무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실정은 회의록관련 전산담당을 속기업무에 대한 비전문인으로 하여금 전담케 하고 속기과 자체 내의 속기실무직원 1명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담당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실무직원에게는 원고작성방식의 변화를 최소화시켜 오류발생을 줄이고 관리자인 담당사무관의 업무도 경감시켜야 전자회의록의 신속·정확한 발간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속기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된 전산전담직원의 고정배치 필요성은 크다.

또한 앞으로 속기과 업무는 회의록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지원능력 강화를 위해 이후에서도 다루고자하는 회의록서비스체제 발전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의정역사인 회의록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끔 하려면 정리 및 색인작업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 단계 높은 입법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회의록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 외 현재 속기과 업무수행시 필요한 회의록발간현황, 집무일지 등의 자동화에도 응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회의록전산화와 그 관리운용을 위해 속기과 내에 전산직을 신설·고정배치하여 전담케 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될 정보화에 원활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합리적 인사 및 보직관리

#### 가. 1위원회 1담당관제 도입

오늘날의 의회는 의원 각 개인의 전문성 못지 않게 입법지원의 전문성 강화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전문화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위원회별, 정치 이슈, 크고 작은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장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격론은 내용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속기과 조직 내부적으로는 승진기회의 절대적 부족과 속기실무인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1인 1조 체제로 운영되는 추세에 있다.

위에서 전술한 바 있는 팀제는 1위원회 1담당관제의 전초로서 속기록 작성업무의 분장을 새롭게 하여 속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매우 유익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속기사들의 인사적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미 속기과 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신속·정확하며 가치 있는 의회기록물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전문화를 위해서 1위원회 1담당관제는 반드시 달성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현재 속기 1·2과에는 각 계별로 1사무관이 2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속기사 1인당 업무량 증가를 고려할 때 사무관 1인의 업무량 증가는 기정사실로서 회의록의 질적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 속기 등 국회법 개정으로 업무의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속기실무자의 증원없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는 여건 속에서 편집을 포함하는 1위원회 1팀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1위원회 1담당관제를 도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담당사무관의 증원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는 전문성 제고와 담당사무관의 업무경감으로 회의록의 질적저하를 막고 신속·정확한 회의록발간에 기여하게 되며 속기과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인사적체의 해소에 직원들의 사기양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 나. 본회의회의록 담당관제 도입

국회의 모든 기록물 중에서 본회의 회의록이 갖는 중요성으로 볼 때 속기과가 담당하고 있는 회의록 발간업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과 상징성 및 대표성을 위해서 본회의회의록 담당관제를 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의회의록을 하나의 틀로서 아우를 수 있도록 회의록 발간업무 및 편집의 기준과 형식을 제시하고 계속 유지·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참속기사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속기과 내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

다.

조직의 본질이 업무에서 비롯된다면 업무에 꼭 필요한 인적구성이 제대로 관리·배치되지 못할 때 그 조직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며 언젠가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다. 4급 이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조직 내 각각의 부서는 일견 따로 움직이는 듯 보이나 한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동하느냐는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각 부서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의 연계, 업무협조, 조화 등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조직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바라본 4급 서기관급의 속기과 내 고정배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 (1) 긍정적 측면

9급 속기서기보로 출발해서 5급 속기사무관을 거친 4급 서기관으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에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속기과 업무의 최종책임자로서 전체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속기록작성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로 업무추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용이하며, 둘째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부서원들과 화합을 기초로 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며, 셋째 속기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연구와 실행에 대한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은 단점, 즉 속기과 조직의 침체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상쇄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



## (2) 부정적 측면

속기직렬의 9급 입법부 공무원으로 출발, 일정 기간이 지나 5급사무관 승진시험에 통과되어도 속기사무관이라는 직렬구분으로 전직시험을 보지 않는 한 타 부서와 순환보직 등의 여지가 없으나 4급으로의 승진은 직렬구분 없이 서기관 총 정원표 상에서 속기과로 배정되므로 타 부서와 교류할 수 있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타 부서로의 승진이나 전보가 사실상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이상, 속기과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조직생활과 자신의 일에 대한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의 낡은 관행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준비와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둘째 화합을 기반으로 한 조직관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속기과 직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객관성을 잃고 온정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셋째 국회사무처 전체와 괴리된 속기과만의 고립된 인사관리는 상대적으로 누적된 속기과 내의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시켜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알력요인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속기직렬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4급이상 직급에서 행정직과 교류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사무처 4급이상 전체정원 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일정시한이 경과하면 타 부서로 전보되어 교류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객관성을 결여한 인사원칙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속기과의 가장 큰 현안인 인사적체문제의 해소와 고령화에 대한 해결이 다소나마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라. 국내·외 연수기회의 확대

지식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사회공익에 부합한 전문성이 요구되며(kearney and Sinha, 1988:571-579), 지식행정의 전문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치적 의식 등이 고려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Mosher, 1978: 144-150)고 한다.

이는 입법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지식의 자산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조직구성이 되지 않고는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속기사는 속기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나 속기과는 속기록만 잘 만들면 된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속기를 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속기록을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및 연수제도는 담당하고 있는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연관성과 조직기여도 면에서 속기과는 교육이나 연수에서 제외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는 앞으로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아래 표-12, 표-13는 국외위탁교육현황이다.

표-12

<최근10年間 국회공무원 국외 위탁교육훈련 현황 (4급이상)>

연도	속기직	행정직	연도	속기직	행정직
1992		1	1997		2
1993		2	1998		1
1994		2	1999		2
1995		2	2000		6
1996	1	2	2001		6

표-13

<최근10年間 국회공무원 단기 외국의회연수 현황>

연도	속기직	행정직	연도	속기직	행정직
1992		6	1997	1	
1993		4	1998		2
1994		4	1999		4
1995		4	2000		4
1996		7	2001	1	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기직렬에서 참가한 연수기회는 매우 적다.

선진 각국의 의사록 작성체제와 우리의 회의록 발간체제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 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회의록의 입법정보로서의 가치제고와 신속·정확한 회의록 발간을 위한 새로운 선진제도의 습득을 위해서도 속기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십 수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들의 경우는 입사 후 열심히 근무하면서 꾸준히 실천해 온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과 축적된 경험이 조직과 업무, 그리고 개인에게 기여한다는 신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교육 훈련제도는 중요하며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속기과에 대한 고정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연수기회의 확대는 조직원 전체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인사관리가 단순히 인물의 배치라는 전근대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교육 폭의 확대와 연수기회의 부여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래 표-14는 국내위탁교육현황이다.

표-14

## &lt;최근10年間 國會議務員 國內 慰勞敎育 훈련 現況&gt; (4급이상)

연도	속기직	행정직	연도	속기직	행정직
1993			1998		
1994			1999		
1995			2000		6
1996			2001		1
1997			2002	1	1

국내대학원과정은 물론 해외(장기)연수나 교육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사무처조직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발전시켜 입법지원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회사무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될 것이다.

조직구성원 하나하나가 참여의식 속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의회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4. 능동적 자구노력 방안

### 가. 입법지원 능력강화

#### (1) 회의록 서비스체제의 발전방안

##### (가) 국회회의록의 정리·색인·통계시스템 도입

일반적으로 국회회의록을 보고자 원하는 수요층은 국회의원 및 관련법안의 이해당사자, 국회 입법지원조직, 행정부의 실무진,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들은 자기가 찾고자 원하는 관련법안의 제·개정 경과와 당시 상황, 기타 참고되는 사항들을 일일이 몇 대 국회, 날짜와 의원명을 확인한 뒤 국회회의록지원시스템으로 검색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 찾는다

하더라도 다른 케이스와의 비교를 하려면 구체적인 회의명과 일자를 먼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에 직면한다.

이는 회의록시스템상의 불안전성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방대한 의정 역사인 회의록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끔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도서관의 책이 잔뜩 쌓여있는 채로 계속 수서한 후 정리·색인을 하지 않은 채 열람·대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금처럼 고서화되어 있는 국회회의록이 읽히는 회의록, 살아 있는 회의록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는 흔하지만 그것을 수요자의 구미에 맞게끔 서비스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각 의원별로 또는 원하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사례가, 어떠한어떠하게 있었다는 체계적인 회의록 정보의 분류·개발·이용시스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회의록에서 무엇이 알고 싶다는 기본취지만 설명하면 가장 최근의 사례부터 역대 그와 비슷한 선례들을 모두 찾아주는 맞춤서비스 기능은 회의록이용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회의록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으로 크게 나눈 뒤 법령자료, 예산심의자료, 국정감·조사자료, 청문회자료, 투표 및 회의운영자료 등으로 세분하여 각종 사례를 여러 통계와 그래프 등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회의록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 내에 책임부서를 두고 역대 국회회의록을 모두 텍스트화 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의원별 맞춤회의록 서비스 기능신설

현행 회의록지원시스템은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각 의원실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들 때는 자신의 발언을 각 회의록에서 발췌하여 대국민 홍보용 책자 등을 만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활동상황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속기과 주도로 각 의원별로 국회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부분, 법안 제안 부분, 투표 찬반을 표시한 부분 등을 정리하여 파일 형태로 만들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인쇄하여 책자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전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제공 기능과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자극제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소위원회 속기업무의 변화모색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거의 모든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한 것은 국회가 방대한 양의 법률안 등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주요한 제도이다. 위원회에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원회 회의록의 필요성은 2000년 2월 9일 제210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국회법 제57조5항), 소위원회 회의록을 남기거나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국회법 제69조4항) 소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 회의록 작성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상설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통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의안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큰 줄거리의 결론만을 가지고 토론 종결된 후 통과되거나 의사가 결정된다. 후대에 그 법안의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회의록 열람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입장이 더욱 보호되고, 어느 쪽의 이익이 희생되었는지, 어느 당의 누가 어느 쪽을 대변했는지도 모른 채 알맹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심사보고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국회회의록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문제는 각 위원회에서의 소극적 요구와 속기과의 수동적 대응으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상임위원회에서만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속기과 스스로의 능동적인 대처는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고 위상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향후 속기과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위원회 회의록 발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 전문성 강화방안

현재 속기과 업무는 특성상 기록담당 전문부서로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독립부서화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원 스스로 전문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1) 교육기회의 확대

회의록의 질은 속기사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성언어를 문자언어화 하기 위해서는 제반분야의 지식수준을 높여 나가는 한편 문법지식 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질 높은 회의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단순히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은 물론이요 속기업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도 간혹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회의록원고작성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자신이 담당하고 생산해 낸 결과물이 현재는 물론 후대에도 최고의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어디에 내 놓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 방면의 실력을 구비해야만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사무처 연수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회 내에서 1년 중 서너번의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나 직원들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회의록발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교육 외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에

도 직원 스스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지속적인 파급이 기대되는 바이다. 앞으로는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글인증시험 등에도 응시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하여 언어의 체계와 활용도 능력을 함양시켜 나갈 때 비로서 회의록작성에 더욱 전문성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사무처 내 공통전문교육 및 선택전문교육 기회의 활용도 전문성강화에 기여하는 바 크다. 근자에는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적극적 참여는 직원 스스로의 능동적 대처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 (2) 사전심의 등 참여의 확대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입법환경이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정책보좌관이 의원 보좌기능으로서 합류되었으며 이는 단지 수적인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발언의 전문화와 정책개발에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게 되었다. 의원 개개인도 전문화·민주화 되어 가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 각 분야의 요구를 소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직능별 대표들로 구성되어 의원발의법률안 등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논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정책자료집을 출간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입법부의 변화와 함께 행정부 관료들 역시 날로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는 사회 및 입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전문가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회의의 모든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속기과로서도 속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양에 있어서도 방대해져 가고 있는 현실로서 각 위원회마다 쏟아져 나오는 전문용어, 수많은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회의록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속기실무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 지식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 제5장 결 론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의 가치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 또한 민주화·정보화·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충족은 정보공개를 의무화시켜 의회에서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주요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의 정보로서의 가치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속기업무의 주안점이 기록보전이라는 면이 강하였으나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회의록의 신속한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속기과로서는 입법정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최근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

조직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 큰 힘은 사명감과 긍지도 중요하지만 업무수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가가 지불될 때 희망을 가지고 더욱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개와 경쟁 없이 우리만의 국한된 조직으로 되어 가는 경향으로 이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침체를 가속화시켜 조직 구성원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여 신속·정확한 회의록발간을 위한 업무수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속기과 직원들의 고령화를 가속과 시키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아 그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회의록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속기사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취득해야 하는 등 전문성과 고유성을 띠고 있다.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처럼 2~3년 간격으로 전보되어서는 수행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의 성격은 장기근속 직원들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해 방안들을 속기과로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속기 및 회의록작성 업무중심의 독립부서화와 편집행정직의 속기직 대체, 1위원

회 1담당관제 도입, 전산적의 신설·고정배치, 고위직 인사의 합리적 운용 등이 그것이다. 이 제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다. 그 외 팀제도입 등 자체적으로 업무운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스스로도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상하 없이 조직발전을 위한 대안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근본에는 직원들 스스로의 실력배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무처로서도 공개와 정당한 경쟁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제약조건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여 수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속기과의 업무가 사실상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제까지의 고착된 운영체제들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줄 때만이 자타가 인정하는 진정한 전문가적인 속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대한속기협회, 1998, 「한국속기50년사」
- 대한속기협회, 1997, 「속기관련연구논총」
- 대한속기협회, 1998, 「속기관련자료·논문집」
- 대한속기협회, 2001, 「속기연구논문집」
- 대한속기협회, 1998, 「속기제제35호」
- 국회사무처, 2001, 「국회의사편람」
- 임종훈외 4인, 1998, 「입법과정론」
- 국회운영위원회, 2002, 「개정국회법소개」



## 속기연구논문집 (2002)

---

발 행 : 2002년 12월 31일

발행인 : 이 희 규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연구위원회

인쇄처 : 서강총업(주) (02)2655-0761 ~ 7

---

전 화 : (02) 788 - 2371 ~ 7

F A X : (02) 788 - 356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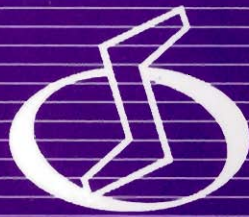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HomePage : <http://www.steno.or.kr>

---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Korea Stenography  
Incorporated Association**